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41호

2017. 12. 14.(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251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7-251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17-251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고 시

제2017-4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철도 및 부대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7
제2017-453호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지형도면 고시	7
제2017-4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9
제2017-455호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9
제2017-456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변경)	45
제2017-457호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5
제2017-460호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54

◆ 공 고

제2017-243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56
제2017-2444호 2017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57
제2017-2447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58
제2017-2452호 중랑구 북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58
제2017-2487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62
제2017-248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65
제2017-2491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67
제2017-2495호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68
제2017-250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71

◆ 구 고 시

제2017-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72
---	----

제2017-157호 사고지(임목 훼손지) 해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73
제2017-163호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75
제2017-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광진구)	79
제2017-1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성북구)	81
제2017-17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성북구)	92
제2017-1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노원구)	97
제2017-1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97
제2017-126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99
제2017-113호 가산동 38-1호(신번지 777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금천구)	100
제2017-96호 도시관리계획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100
제2017-97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103
제2017-98호 도시관리계획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105
제2017-16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송파구)	107
제2017-1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송파구)	108
제2017-1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114

◆ 구 공 고

제2017-16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학교)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초구)	118
제2017-16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서초구)	120
제2017-159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강동구)	121

◆ 사업소고시

제2017-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23
제2017-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23

◆ 기 타

제2017-29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4
제2017-29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4

제2017-30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5
제2017-30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5
제2017-30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6
제2017-30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7
제2017-30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7
제2017-31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8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1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명칭 변경 및 부서간 사무이관과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직위 변경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직속기관 내 부서 신설 및 본청 부서 명칭변경

- 세곡119안전센터 개관에 따른 소재지 및 관할범위 지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복합개발' 및 서울식물원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담부서 신설
- '시민참여예산과' 명칭을 '담당관'으로 조정

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 소관부서 조정

- 유니버설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업무를 문화본부로 일원화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소관 변경

다. 인사운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직위 조정 등

- 경제진흥본부장, 공공개발센터장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1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18.1월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급 조정

2. 주요내용

총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증원하고, 직렬·직급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분야 인력보강 및 적정인력 배치

- 조직문화 혁신 및 업무경감 지원을 위한 증원 및 직급부여(+373명)
- 119안전센터장, 운전·시설관리 등 현업인력 직급상향(31명)
- 환경변화 반영, 기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3명)
- 관리운영직군 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른 일반직으로의 정원조정(37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1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실무적 정책개발·입안 역량 강화 및 정책기획 수요 적시 대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2. 주요내용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시도명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서울	3.5 → 4% (+0.5%p.)	14 → 15% (+1%p.)	33 → 34% (+1%p.)	34 → 35% (+1%p.)	14.5 → 11% (△3.5%p.)	1%

※ 기준비율의 개정으로 실제 직급조정은 별도 검토 및 시행 필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철도 및 부대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호(1982.1.28)로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1982.3.9) 및 제219호(1982.6.5)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고, 동 고시 제507호(1982.12.9) 및 제508호(1982.12.9)에 의한 허가정정고시와 동 고시 제2016-419호(2016.12.29)로 변경인가 된 지하철 3,4호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 도서는 서울교통공사 (총무처 ☎02-6311- 912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2월 14일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지하철 3호선 : 지축역~양재역
- (2) 지하철 4호선 : 상계역~사당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지하철 3,4호선 도시철도(본선, 정거장 및 부대시설) 건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 3호선-28.9km, 4호선-30.3km, 차량기지-2개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주소 : 당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2) 성명 : 당초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 → 변경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마. 사업의 착수·준공예정년월일

- (1) 착수일 : 1982. 3. 9.
- (2) 준공예정일 : 당초 2017. 12. 31. → 변경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과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3호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원
- 면적: 5,232.0m²

2. 촉진지구의 지정일: 2017년 12월 6일

3. 사업의 종류: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칭: (주)이랜드월드, (주)이랜드건설
- 대표자 성명: 정수성, 김일규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7(창전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802호
- 법인등록번호: 110111 - 0365797, 110111 - 084168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19	8	대	4,459.0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1/1	(주)신한은행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00원 (채무자:(주)이랜드월드)
								(주)외환은행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0원 (채무자:(주)2001아울렛)

연번	소재지			지목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본번	지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2		15	2	도	23.0	김방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5-4	1/1	없음	-	-		
3	창전동	129	1	도	13.0	김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국 (분당세무서)	-	압류		
						김수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79 탄현마을 1201-1204	2/9	없음	-	-		
						김지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박정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3/9					
						김도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구인길 33-10	15/22	없음	-	-		
4	창전동	136	1	대	26.0	김숙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48	1/22	서울시 마포구	-	압류		
						박정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18/198	없음	-	-		
						유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65 새터미을 현대홀타운 704-702	4/22					
						서울특별시 마포구		3207/3545	없음	-	-		
5		12	1	도	708.5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78-1, 3층(구수동, 성보빌딩)	338/3545					
6		128	3	대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1/1	없음	-	-		
계					5,232.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지번						연면적 (m ²)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행정동	본번	부번																
1	창전동	19	8	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976-08-17	8,674.22	1	9	(주)이랜드월드	(주)이랜드월드 주식한 은행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00원 (채무자:(주)이랜드월드)						
											(주)이랜드월드 주외환 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0원 (채무자:(주)2001아울렛)						
							계	8,674.22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결정	마포 청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원	5,232.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232.0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7. 기타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 및 인정함.

8.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4)와 마포구청 4층 주택과(02-3153-93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원
- 면 적: 5,232.0m²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칭: (주)이랜드월드, (주)이랜드건설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7(창전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802호
- 대표자성명: 정수성, 김일규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0년
-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4,264.0	81.5	임대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968.0	18.5	도로용지
합 계	5,232.0	100.0	-

※ 도로는 설치 및 조성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수용계획

- 1) 수용인구: 746명 내외
- 2) 주택건설계획: 589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 임대주택	26A TYPE	44	7.5	88	11.8
	26B TYPE	12	2.0	24	3.2
	26C TYPE	4	0.7	8	1.1
	소 계	60	10.2	120	16.1
기업형 임대주택	17A TYPE	398	67.6	398	53.4
	17B TYPE	60	10.2	60	8.0
	29A TYPE	20	3.4	53	7.1
	29B TYPE	10	1.7	27	3.6
	29C TYPE	9	1.5	24	3.2
	29D TYPE	32	5.4	64	8.6
	소 계	529	89.8	626	83.9
합 계	589	100.0	746	100.0	세대당 1.3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2	(1)	8~10	집산도로	98.8	창전동 12-1	창전동 12-1	일반도로	-	-

※ ()는 임시번호임

2) 공공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대	건축면적 1,738.16m ²	서울시에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서울시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지 내 자연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도·광장 등의 포장면은 지양하며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을 실시하여 생태면적을 최대 확보, 비오톱 향상을 도모함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 · 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결정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원	5,232.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면적(㎡)	결정(변경)사유
-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232.0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232.0	-	5,232.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232.0	감) 4,264.0	968.0	81.5
준주거지역	-	증) 4,264.0	4,264.0	18.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창전동 19-8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264.0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 변경없음

-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계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2	(1)	8~10	집산도로	98.8	창전동 12-1	창전동 12-1	일반도로	-	-

※ ()는 임시번호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1)	·도로신설 - 폭원 : 8~10m, 연장 : 98.8m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지와 주변지역 진출입로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신설

(2) 공공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대	건축면적 1,738.16m ²	서울시에 기부채납

※ 사회복지시설(서울시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 · 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3)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계재생략

다)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	마포구 창전동 19-8	-	증) 4,264.0	4,264.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획지1	·획지계획 신설 : 4,264.0m ²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을 위하여 획지계획 신설

- (2) 회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주거복합)^{주)} ※ 단, 지하1층, 지상1층 비주거용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 숙박시설 · 위탁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 관련법에 따른 불허용도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불허용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용도 등의 도입을 막기위해 불허용도로 결정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分	결 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p>※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p>	
높 이	· 70m 이하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사업조건 항목	내용	완화내용	비고
결정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 비율		
		· 제한 없음(지상1층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사유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지 침 내 용
건축한계선	·대상지 동남측: 건축한계선 3m ·대상지 남측: 건축한계선 3m

바) 공공기여 계획

구 分	면 적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 고 ^(주)
공공임대주택	건축연면적 4,249.08㎡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24.36㎡	10.02%
기반시설(도로)	부지면적 257.00㎡	도로 설치 및 제공	257.00㎡	4.91%
사회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연면적 1,738.16㎡	사회복지시설 및 부속토지	587.99㎡	11.24%

주) 전체 구역면적(5,232.0㎡)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

2)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창전동	19	8	대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1/1	(주)신한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00원 (채무자:(주)이랜드월드)
								(주)외환은행	-	근저당권설정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0원 (채무자:(주)2001아울렛)
2		15	2	도	23.0	김방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5-4	1/1	없음	-	-
	3	129	1	도	13.0	김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국 (분당세무서)	-	압류
						김수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79 탄현마을 1201-1204	2/9			
						김지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0-8	2/9			
						박정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3/9			
	4	136	1	대	26.0	김도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구인길 33-10	15/22	없음	-	-
						김숙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48	1/22	서울시 마포구	-	압류
						박정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5 (구의동)	18/198			
						유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65 새터마을 현대홈타운 704-702	4/22			
	5	12	1	도	708.5	서울특별시 마포구		3207/3545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78-1, 3층(구수동, 성보빌딩)	338/3545	없음	-	-
6		128	3	대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1/1	없음	-	-
	계				5,232.0			-			

2)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m ²)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창전동	19	8	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976-08-17	8,674.22	1	9	(주)이랜드월드 (주)신한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00원 (채무자:(주)이랜드월드)		
											(주)외환은행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0원 (채무자:(주)2001이울렛)		
							계	8,674.22					-		

3) 토지취득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 및 인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토지수용 등 예정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도로	마포구 창전동 12-1 외 4필지	968.0m ²	- 1개 노선(일반도로(소로)) - 현황도로 확장 및 재정비 - 조성 후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창전동 19-8	건축연면적 1,736.16m ²	- 위치 : 지상1층 - 건축물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나)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도로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5,232.0	100.0	-	-	-
주택건설용지	4,264.0	81.5	자체사용	승인후	-
기반시설용지	968.0	18.5	서울시	승인후	일부 공공기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 임대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주)이랜드월드(대표자: 정수정) 외 1인
 - 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7(창전동)
4. 사업의 시행기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0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
 - 나. 대지면적: 4,264.00m²
 - 다. 건폐율: 69.45%(건축면적: 2,961.52m²)
 - 라. 용적률: 475.89%(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0,291.87m²)
 - 마. 용도: 공동주택(공공임대 60세대/민간임대 529세대),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 바. 규모: 2개동, 지하5층/지상15·16층, 연면적 35,270.53m²
 - 사.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6. 기타사항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익사업 지정 및 인정함.
 - 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5호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61호(2017.5.4.)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73호(2017.7.2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65,783	

라. 시행자: (변경)

- 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

마. 시행기간: 변경없음

- 1) 2007년 12월 28일~2018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지구분할: 변경없음

(단위 : m²)

구분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지구분할	3,665,783	1,066,199	1,902,488	697,096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2)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157,382	-	-	157,382	-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마곡동 32-18일원	107,382	-	-	107,382	서고제506호 (88.6.4)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마곡동 70-2일원	50,000	-	-	50,000	서고 제2012-270호 (2012.10.11)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변경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2)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157,382	-	-	157,382	-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마곡동 32-18일원	107,382	-	-	107,382	서고제506호 (88.6.4)	
변경	1	유수지	유수시설	마곡동 32-18일원	107,382 (41,547.8)			107,382 (41,547.8)	서고제506호 (88.6.4)	일부복개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마곡동 70-2일원	50,000	-	-	50,000	서고 제2012-270호 (2012.10.11)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 () 유수지 복개 면적임 (41,547.8m ² : 구조물부분 25,653m ² , 뒷채움부분 15,894.8m ²)										

5) 흙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당초				변경				비고	
(1) 단독주택용지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 내용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 내용		
R	R1~R4	1지구	R1~R4	R	R1~R4	1지구	R1~R4		
		2지구	-			2지구	-		
		3지구	-			3지구	-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주택 : R1-2, R2-2, <u>R3-2~4</u>, (3가구) R4-1~2 -다가구주택 : R1-1, R1-3, R1-4, (5가구) R2-1, R2-3, <u>R3-1, R3-5, R4-3</u>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주택 : <u>R1-2(삭제)</u>, R2-2, <u>R3-3~4(변경)</u>, R4-1~2 -다가구주택 : <u>R1-1~4(변경)</u>, R2-1, R2-3, <u>R3-1~2(변경)</u>, R3-5, R4-3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이하			높이	3층이하		
		배치	-			배치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소1~8, 소2~25, 소2~26) : 1m - 경관녹지변(경관녹지 7, 8) : 1m - 구역경계변 : 1m - 소공원변 : 1m - 편의시설용지(S4) : 1m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소1~8, 소2~25, 소2~26) : 1m - 경관녹지변(경관녹지 7, 8) : 1m - 구역경계변 : 1m - 소공원변 : 1m - 편의시설용지(S4) : 1m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자.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 도서 참조(고시문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부문은 생략)

당 초	변경	비고												
<p>①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9조 허용용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허용용도</th> </tr> </thead> <tbody> <tr> <td>A 단독주택용지</td> <td>R1~ R4</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R1-2, R2-2, (3가구) R3-2~4, R4-1~2 -다가구주택 : R1-1, R1-3, R1-4, (5가구) R2-1, R2-3, R3-1, R3-5, R4-3 </td> </tr> </tbody> </table> <p>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4조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수 단독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아래와 같이 최대 5가구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주택(3가구) : R1-2, R2-2, R3-2~4, R4-1~2 -다가구주택(5가구) : R1-1, R1-3, R1-4, R2-1, R2-3, R3-1, R3-5, R4-3 	구 분		허용용도	A 단독주택용지	R1~ R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R1-2, R2-2, (3가구) R3-2~4, R4-1~2 -다가구주택 : R1-1, R1-3, R1-4, (5가구) R2-1, R2-3, R3-1, R3-5, R4-3 	<p>①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9조 허용용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허용용도</th> </tr> </thead> <tbody> <tr> <td>A 단독주택용지</td> <td>R1~ R4</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R1-2<삭제>, R2-2, (3가구) R3-3~4<변경>, R4-1~2 -다가구주택 : R1-1~4<변경>, R2-1, (5가구) R2-3, R3-1~2<변경>, R3-5, R4-3 </td> </tr> </tbody> </table> <p>제4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4조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수 단독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아래와 같이 최대 5가구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구주택(3가구) : R1-2<삭제>, R2-2, R3-3~4<변경>, R4-1~2 -다가구주택(5가구) : R1-1~4<변경>, R2-1, R2-3, R3-1~2<변경>, R3-5, R4-3 	구 분		허용용도	A 단독주택용지	R1~ R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R1-2<삭제>, R2-2, (3가구) R3-3~4<변경>, R4-1~2 -다가구주택 : R1-1~4<변경>, R2-1, (5가구) R2-3, R3-1~2<변경>, R3-5, R4-3 	
구 분		허용용도												
A 단독주택용지	R1~ R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R1-2, R2-2, (3가구) R3-2~4, R4-1~2 -다가구주택 : R1-1, R1-3, R1-4, (5가구) R2-1, R2-3, R3-1, R3-5, R4-3 												
구 분		허용용도												
A 단독주택용지	R1~ R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 R1-2<삭제>, R2-2, (3가구) R3-3~4<변경>, R4-1~2 -다가구주택 : R1-1~4<변경>, R2-1, (5가구) R2-3, R3-1~2<변경>, R3-5, R4-3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02-2133-153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02-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단(☎ 02-3410-7686)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1)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기정	①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10,805	-	1,110,805	

변경	①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칭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10,805	증) 12,979	1,123,784	

※ 변경사유 : 마곡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기재 생략)

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 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신범수)

라)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기재 생략)

마) 주요 유치업종 : 변경없음(기재 생략)

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기정				변경			
⑥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⑥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2)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표]				2)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기정	증감	비고		기정	증감	비고
합계	1,110,805	-	100.0	합계	1,110,805	증) 12,979	1,123,784
산업시설 용지	729,785	-	65.7	산업시설 용지	729,785	-	729,785
자원시설 용지	81,326	-	7.3	자원시설 용지	81,326	-	81,326
녹지시설 용지	소계	76,469	6.9	소계	76,469	-	76,469
	문화공원	20,382	1.8	문화공원	20,382	-	20,382
공공시설 용지	녹지	56,087 (56,685)	5.1	녹지	56,087 (56,685)	-	56,087 (56,685)
	소계	211,459	19.0	소계	211,459	-	224,438
기타시설 용지	도로	211,459	19.0	도로	211,459	-	211,459
	소계	11,766	1.1	소계	11,766	-	11,766
기타시설 용지	주차장	6,776	0.6	주차장	6,776	-	6,776
	가스 충전소	4,000	0.4	가스 충전소	4,000	-	4,000
보육시설				보육시설	990	-	990

기정	3)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		비 고					
	합 계		1,110,805	-	1,110,805	100.0							
변경	3)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		비 고					
	합 계		1,110,805	증)12,979	1,123,784	100.0							
변경	준 공 업 지 역		1,110,805	-	1,110,805	98.8							
	일 반 상 업 지 역		-	증)12,979	12,979	1.2							
	※ 변경사유 : 마곡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												
변경	4)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2) 도로(지하도로) (신설)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규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폭원(m)	기능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	-	-	-	-	-	-	-	-	-	서고	-
	변경	1	특수 도로 14~102	324.8 마곡동 369-10 375-5답	마곡동 369-10 375-5답	마곡동 369-10 375-5답	지하공공 보도시설	15,625	-	14,978	647	제2012-270호 (2012.10.11)	광장1, 균공1, 연녹5, 대로1-1과 중복결정
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3) 광장(신설)												
	(가)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변경	기정	-	-	-	-	-	-	-	-	-	-	-	-
	변경	1	광장	마곡동 368-3 일원	12,979	-	12,97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 보도시설 1 포함			
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 사)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 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기재 생략)
- 자)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02-2133-153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02-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단(☎ 02-3410-7686)
- 2)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기재 생략)
-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기재 생략)
-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없음(기재 생략)
-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기정	④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비 고
	명 칭	위 치		면 적(m ²)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10,805	-	1,110,805		
④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변경	명 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마곡 일반산업단지	서울특별시 마곡동 727-551일원	1,110,805	증) 12,979	1,123,784		
※ 변경사유 : 마곡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기정								변경					
구분	기양동		내발산동		마곡동		총합계		구분	마곡동		총합계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m ²)	개수	면적(m ²)
묘	1	361	-	-	1	2,508	2	2,869	임	7	7,392	7	7,392
임	6	7,444	-	-	1	1,988	7	9,432	묘	2	2,248	2	2,248
공	3	1,226	4	1,172	-	-	7	2,398	공	8	1,880	8	1,880
구	50	27,849	23	6,113	28	7,194	101	41,156	구	114	50,099	114	50,099
답	362	504,874	103	157,902	201	234,346	666	897,122	답	733	949,785	733	949,785
대	33	61,023	-	-	1	1,625	34	62,648	대	34	49,019	34	49,019
도	30	19,035	4	3,521	8	2,752	42	25,308	도	53	10,018	53	10,018
잡	10	10,150	-	-	-	-	10	10,150	잡	11	7,956	11	7,956
전	58	30,084	-	-	18	14,380	76	44,464	전	77	34,038	77	34,038
제	-	-	-	-	20	6,604	20	6,604	제	28	5,185	28	5,185
천	3	1,516	2	7,736	1	1,372	6	10,624	천	10	5,809	10	5,809
학	1	453	-	-	-	-	1	453	학	2	356	2	356
총합계	557	664,015	136	176,444	279	272,769	972	1,113,228	총합계	1,079	1,123,784	1,079	1,123,784

기정				변경						
⑥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⑥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면 적(m ²)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비고
합 계		1,110,805	-	1,110,805	100.0	1,110,805	증) 12,979	1,123,784	100.0	
산업시설 용지	산업시설 용지	729,785	-	729,785	65.7	729,785	-	729,785	64.9	
지원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81,326	-	81,326	7.3	81,326	-	81,326	7.2	
녹지시설 용지	소계	76,469	-	76,469	6.9	76,469	-	76,469	6.8	
	문화공원	20,382	-	20,382	1.8	20,382	-	20,382	1.8	
공공시설 용지	녹지	56,087 (56,685)	-	56,087 (56,685)	5.1	56,087 (56,685)	-	56,087 (56,685)	5.0	
	소계	211,459	-	211,459	19.0	211,459	-	224,438	20.0	
기타시설 용지	도로	211,459	-	211,459	19.0	211,459	-	211,459	18.8	
	소계	11,766	-	11,766	1.1	11,766	-	11,766	1.1	
보육시설	주차장	6,776	-	6,776	0.6	6,776	-	6,776	0.6	
	가스 충전소	4,000	-	4,000	0.4	4,000	-	4,000	0.4	
보육시설		990	-	990	0.1	990	-	990	0.1	

기정	3)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110,805		-		1,110,805		100.0						
변경	준 공 업 지 역		1,110,805		-		1,110,805		100.0						
	3)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합 계		1,110,805		증)12,979		1,123,784		100.0						
	준 공 업 지 역		1,110,805		-		1,110,805		98.8						
	일 반 상 업 지 역		-		증)12,979		12,979		1.2						
	※ 변경사유 : 마곡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기정	-														
변경	4)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2) 도로(지하도로) (신설)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도면 표시 번호 - 1 14~102	규 모 폭원(m) 특수 도로 324.8	연장 기점 미곡동 369- 10	기점 종점 미곡동 375-5 답	사용형태 지하공공 보도시설 15,625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서고 제2012-270호 (2012.10.11)	비고 광장1, 교통1, 연녹5, 대로1-1과 중복결정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	-	-	-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변경	(3) 광장(신설)														
	(가) 광장 결정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도면 표시 번호 - 1 광장	시설명 마곡동 368-3 일원	위치 -	면적 (m ²)			최초결정일 서고 제2008-498호 (2008.12.30)	비고 지하공공 보도시설 1 포함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 아래 기재 사항 외는 변경없음

기정	⑯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110,805	-	1,110,805	100.0	
변경	준 공 업 지 역	1,110,805	-	1,110,805	100.0	
	⑯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합 계	1,110,805	증)12,979	1,123,784	100.0	
	준 공 업 지 역	1,110,805	-	1,110,805	98.8	
	일 반 상 업 지 역	-	증)12,979	12,979	1.2	
	※ 변경사유 : 마곡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변경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5,722 (1,110,805)	-	3,665,885 (1,110,805)
변경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곡동 일원	3,665,783 (1,110,805)	- (증 12,979)	3,665,783 (1,123,784)	()는 산업단지 면적임
※ 변경사유 : 마곡광장을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기정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2) 도로(지하도로) (신설)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변경	1	14~102	특수 도로	324.8	마곡동 369-10	마곡동 375-5 답	지하 공공 보도 시설	15,625	14,978	647	서고 제2012-270 호 (2012.10.11)	광장1,근공1 , 연녹5, 대로1-1과 중복결정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3) 광장(신설)																								
(가) 광장 결정 조서																								
변경	1	광장	마곡동 368-3 일원	12,979	-	12,979	-	-	-	서고 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 보도시설 1 포함													
※ 변경사유 : 산업단지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편입																								

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변경없음(기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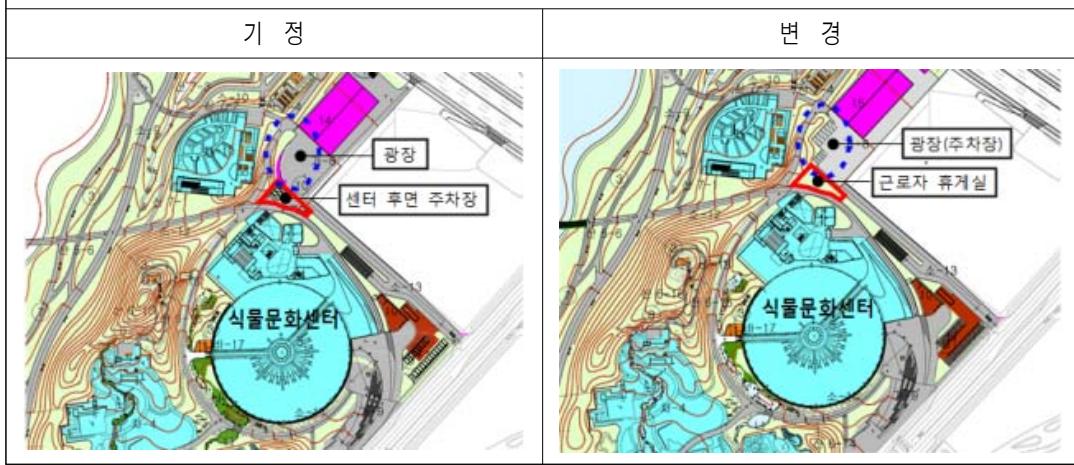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변경) * 세부내용은 관련도서(공람) 참고

1. 서울식물원(근린공원1) 조성계획 변경

• 결정조서 총괄표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 축 물			공작물 (개)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 축 물			공작물 (개)		
			동수 (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동수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계	504,012.00	182,269.46	15	30,432.56	77,969.77	472	504,012.00	182,280.48	15	29,838.48	80,134.83	472		
기반 시설	소 계	90,923.90	90,923.90				90,934.92	90,934.92					증)11.02	
	도로	48,318.19	48,318.19				48,444.86	48,444.86					소로3-19 증)126.67	
	광장	39,408.64	39,408.64				39,292.99	39,292.99					가-8 감)115.65	
	보행교	3,197.07	3,197.07				3,197.07	3,197.07						
조경 시설	20,288.45	20,288.45					20,288.45	20,288.45						
휴양 시설	1,945.19	1,945.19				443	1,945.19	1,945.19				443		
유희 시설	2,506.26	2,506.26				22	2,506.26	2,506.26				22		
운동 시설	4,500.00	4,500.00	2	2,046.71	7,127.00		4,500.00	4,500.00	2	2,046.71	7,127.00			
교양 시설	50,706.41	50,706.41	5	25,221.85	67,678.77		50,706.41	50,706.41	5	24,627.77	69,843.83		건축물연면적 증)2,165.06	
편의 시설	8,083.20	8,083.20	6	1,364.00	1,364.00	6	8,083.20	8,083.20	6	1,364.00	1,364.00	6		
관리 시설	3,316.05	3,316.05	2	1,800.00	1,800.00	1	3,316.05	3,316.05	2	1,800.00	1,800.00	1		
녹지및기타	321,742.54						321,731.52						감)11.02	
시 설 율 (법정 40%)	$(182,269.46 / 504,012) \times 100 = 36.16\%$						$(182,280.48 / 504,012) \times 100 = 36.17\%$							
건 폐 율 (법정 10%)	$(30,432.56 / 504,012) \times 100 = 6.03\%$						$(29,838.48 / 504,012) \times 100 = 5.92\%$							

•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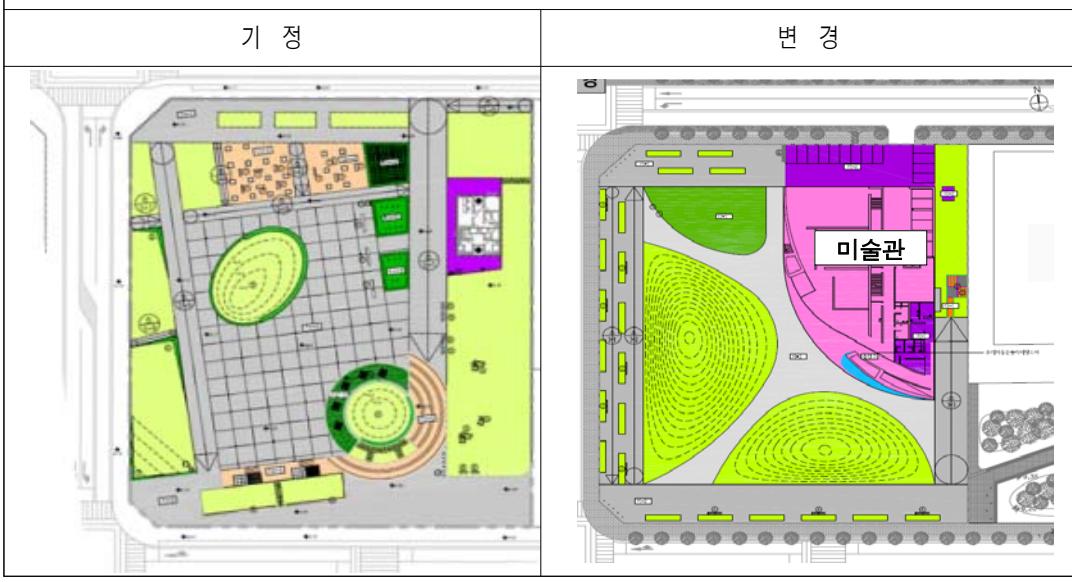


2. 문화공원2호 조성계획 변경

• 결정조서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계	– 기정	8,298.0	5,342.5	1동	145.8	145.8	57	시설율: 64.4%
	– 변경	8,298.0	5,350.7	1동	1556.0	2,065.4	33	시설율: 64.5%
도로 및 광장	소계	– 기정	4,106.5	4,106.5				
		– 변경	2,990.4	2,990.4				
	도로	진입로 외	기정	1,149.5	1,149.5			
			변경	881.3	881.3			
	광장	광장	기정	2,957.0	2,957.0			
			변경	2,109.1	2,109.1			
조경시설	파고라 외	기정	327.0	327.0			15	
		변경	379.7	379.7			3	
휴양시설	등의자 외	기정	659.0	659.0			33	
		변경	35.7	35.7			28	
교양시설	미술관	기정						
		변경	1,437.4	1,437.4	1동	1,437.4	1,946.8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외	기정	250.0	250.0	1동	145.8	145.8	9
		변경	507.5	507.5	–	118.6	118.6	2
녹지 및 기타	녹지	기정	2,957.5					
		변경	2,947.3					

• 문화공원2 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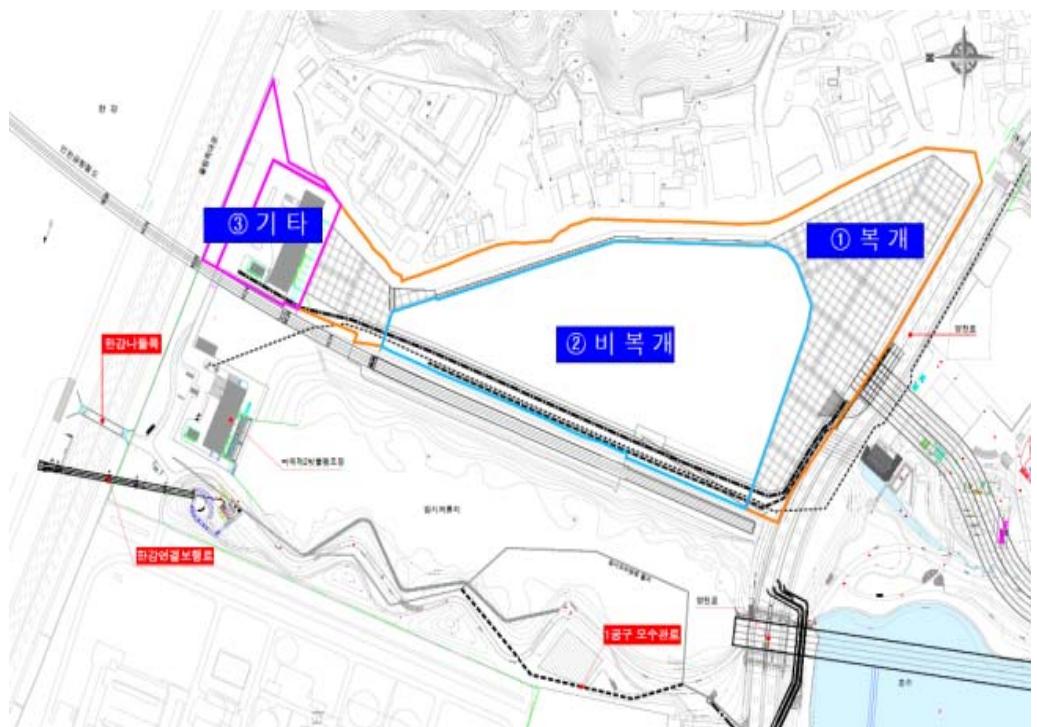


3. 유수지 복개시설 계획

• 유수시설 조서

구 분	시설내용	부호		부지면적(㎡)	비고
유수시설	계			107,382.0	
	복개	①	소 계	41,547.8	
			구조물	25,653.0	
			뒷채움	15,894.8	
	비복개	②		54,073.9	
	기타	③		11,760.3	

-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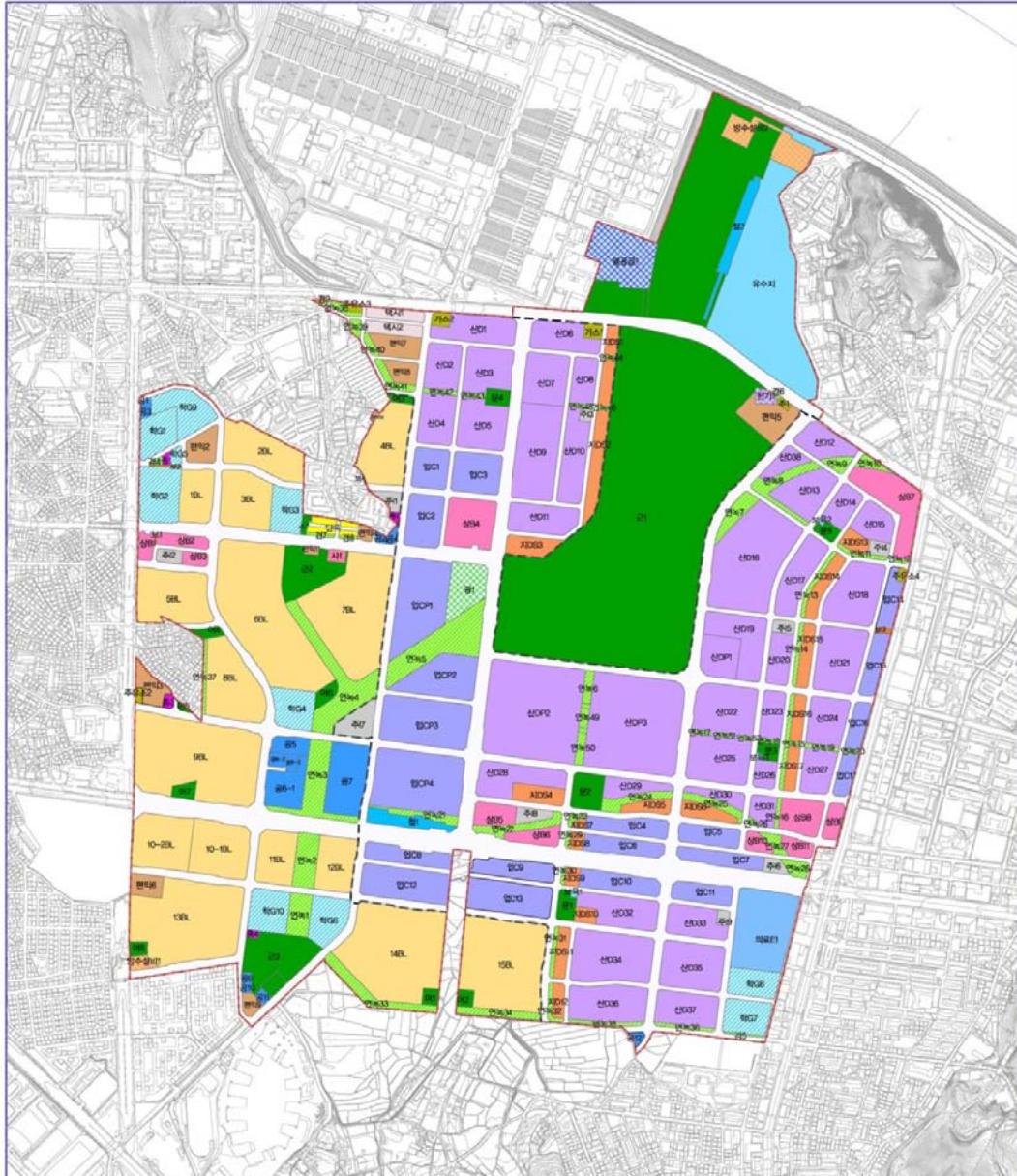
위 치 도



항 공 사 진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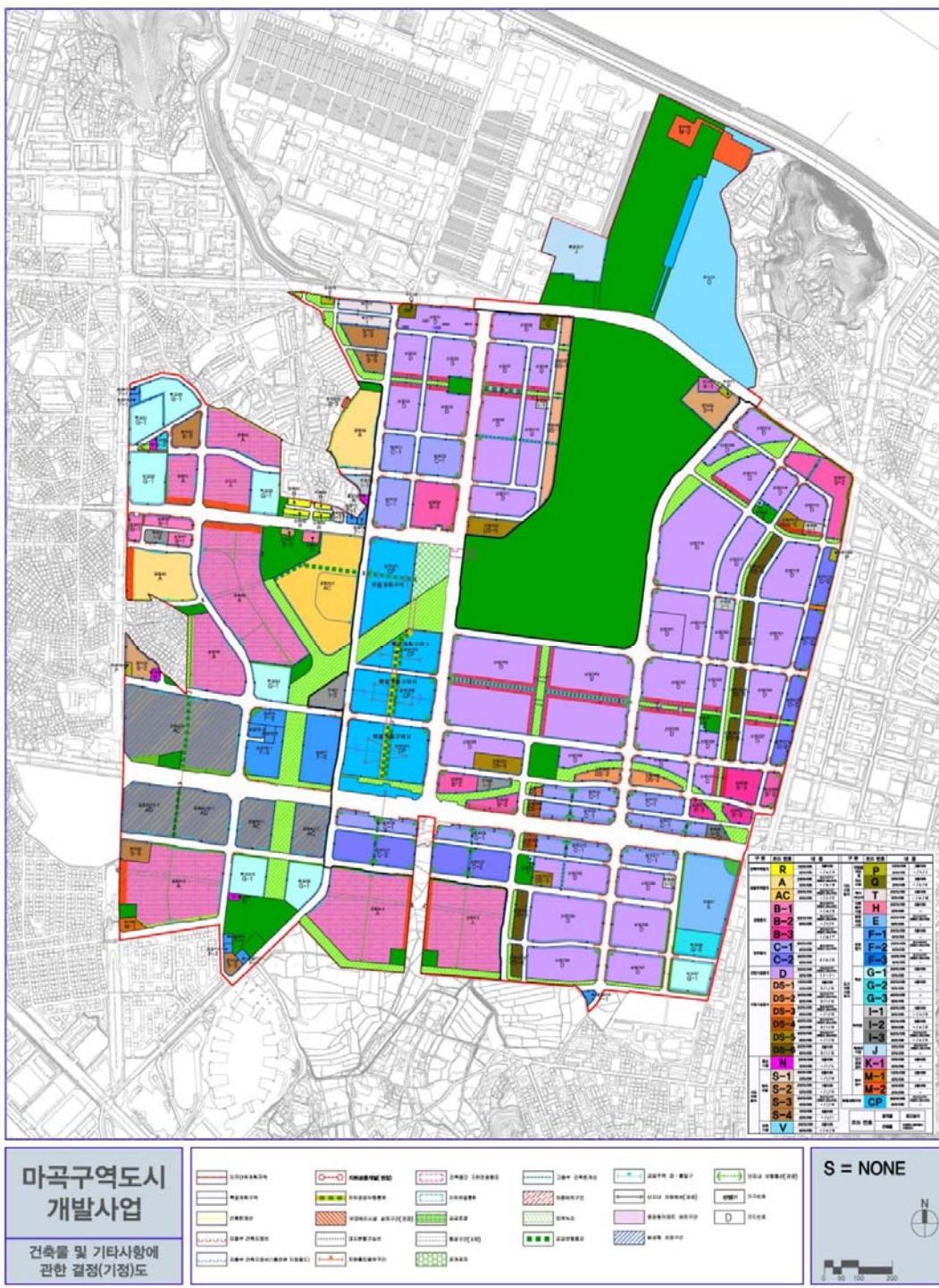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기정)도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원	학교	전기광급설비	종교시설	철도용지
상업용지	관광행사	녹지	방수설비	주유소	사회복지시설	관광광장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월광급설비	산업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	호수침프장	유보지
편의시설	주차장	지원시설	백화자고지	광장	가스충전소	지구분밀선
회동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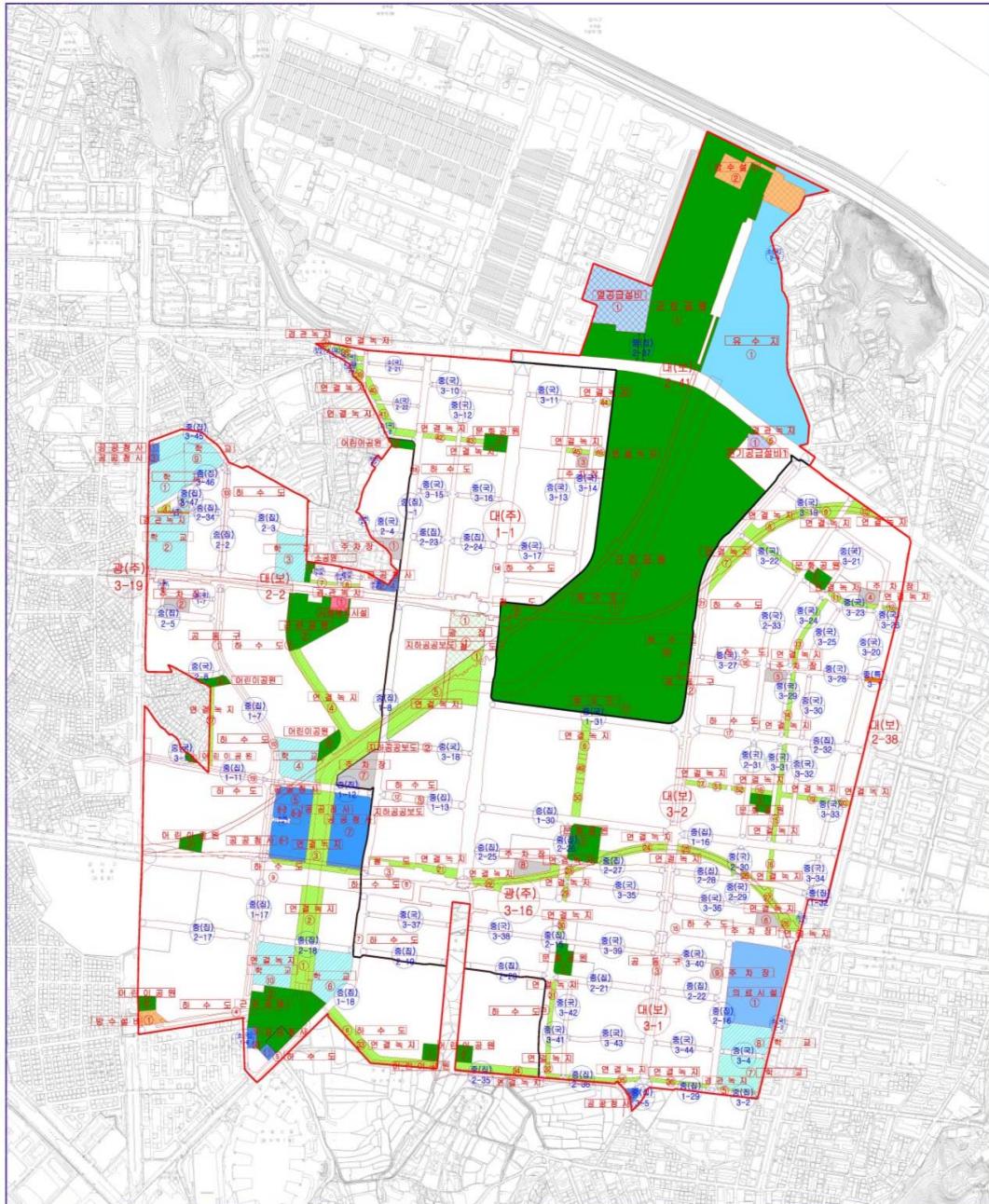
S = NONE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도 시 계 획 시 설 결 정 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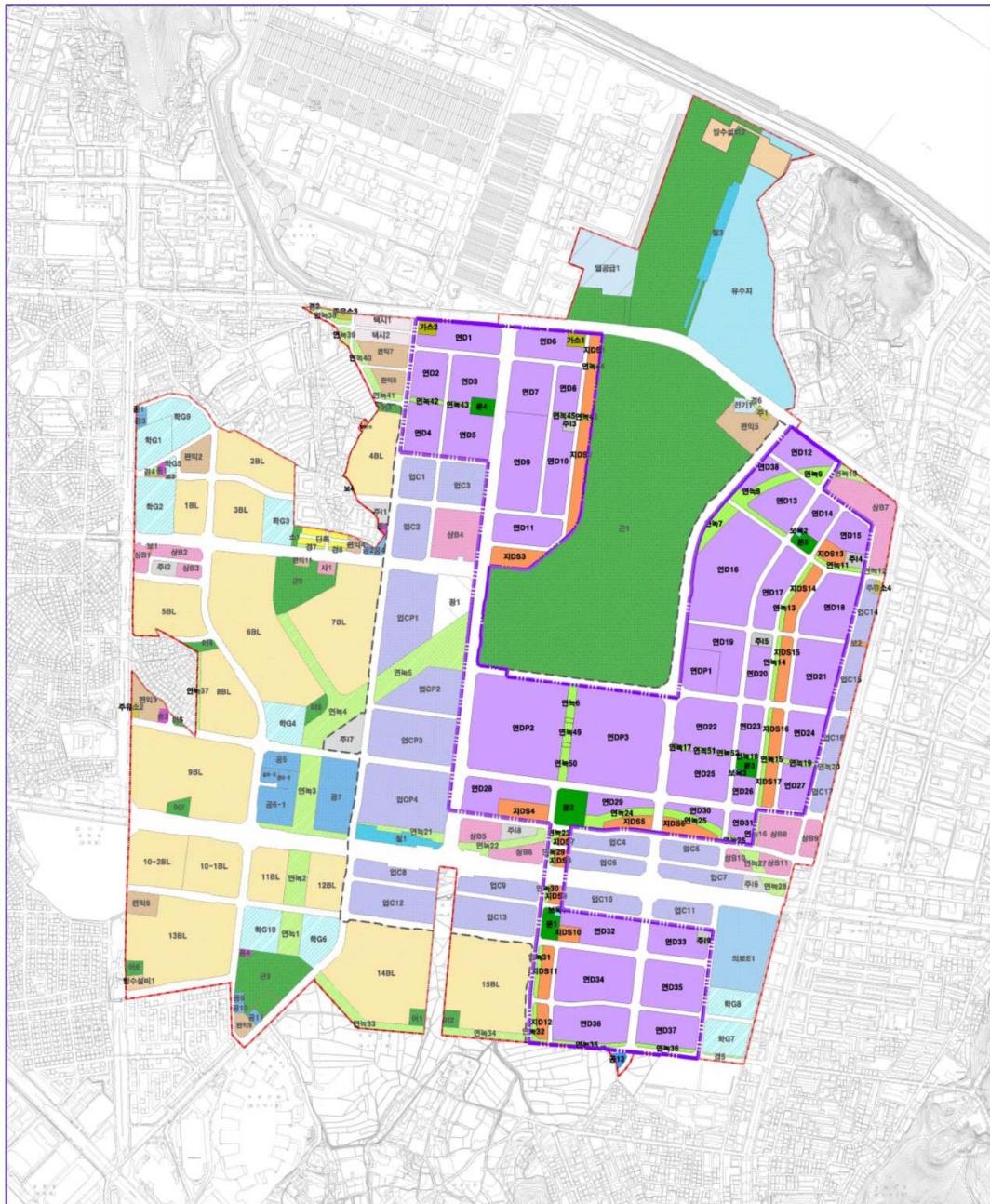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도

S = 1 : 5,000



산업 단지 토지 이용 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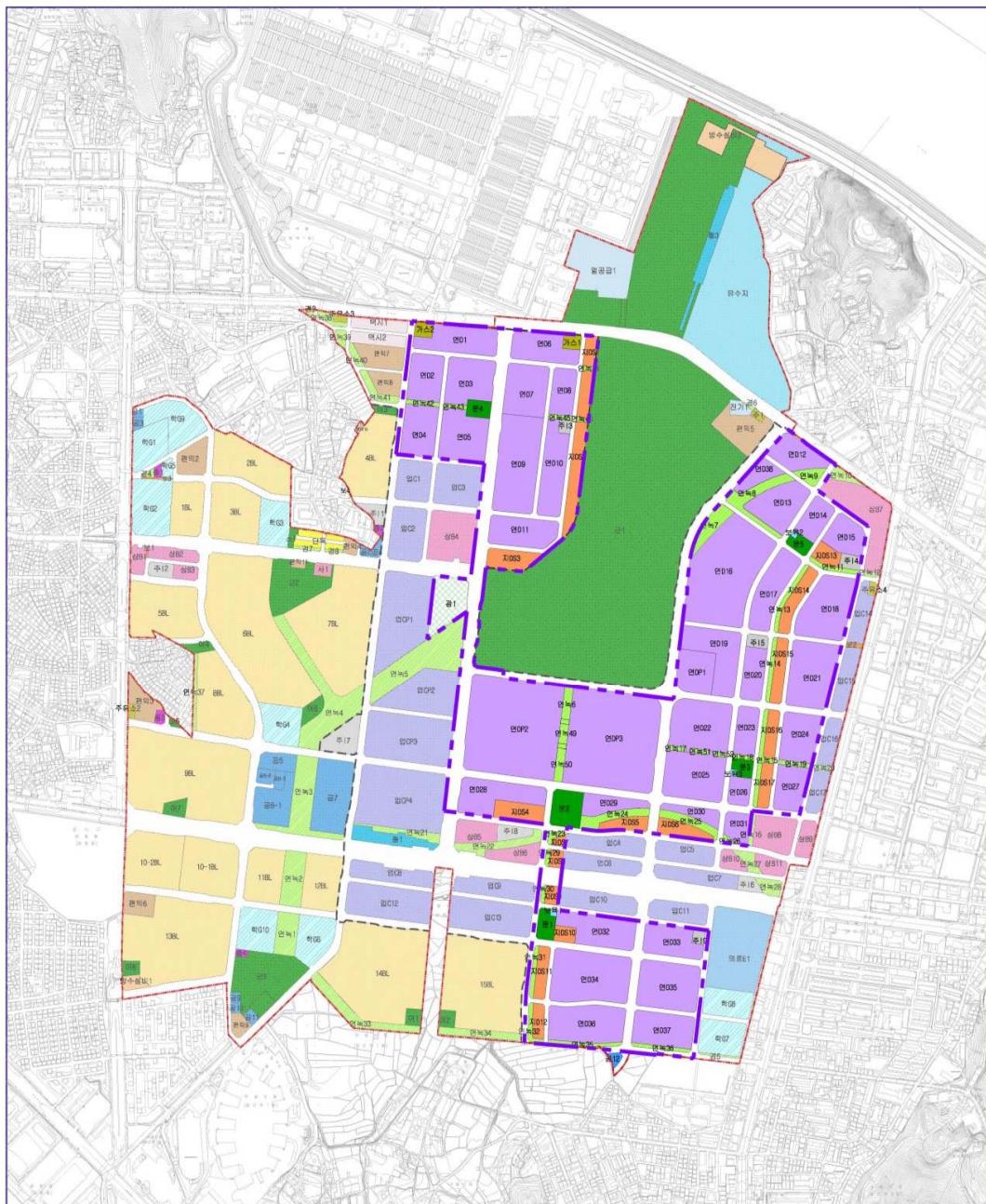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산업 단지
토지이용계획(기정)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공업용지	학교	전기공급설비	종교시설	철도용지
상업용지	공공청사	녹지	방수설비	주유소	사회복지시설	광광장
업무용지	종합의료시설	열공급설비	연구복합용지	보행자전용도로	오수펌프장	유보지
편의시설	주차장	지원시설	택시차고지	광장	가스충전소	지구분할선
점용시설						

S = 1 : 5,000

N

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도(변경)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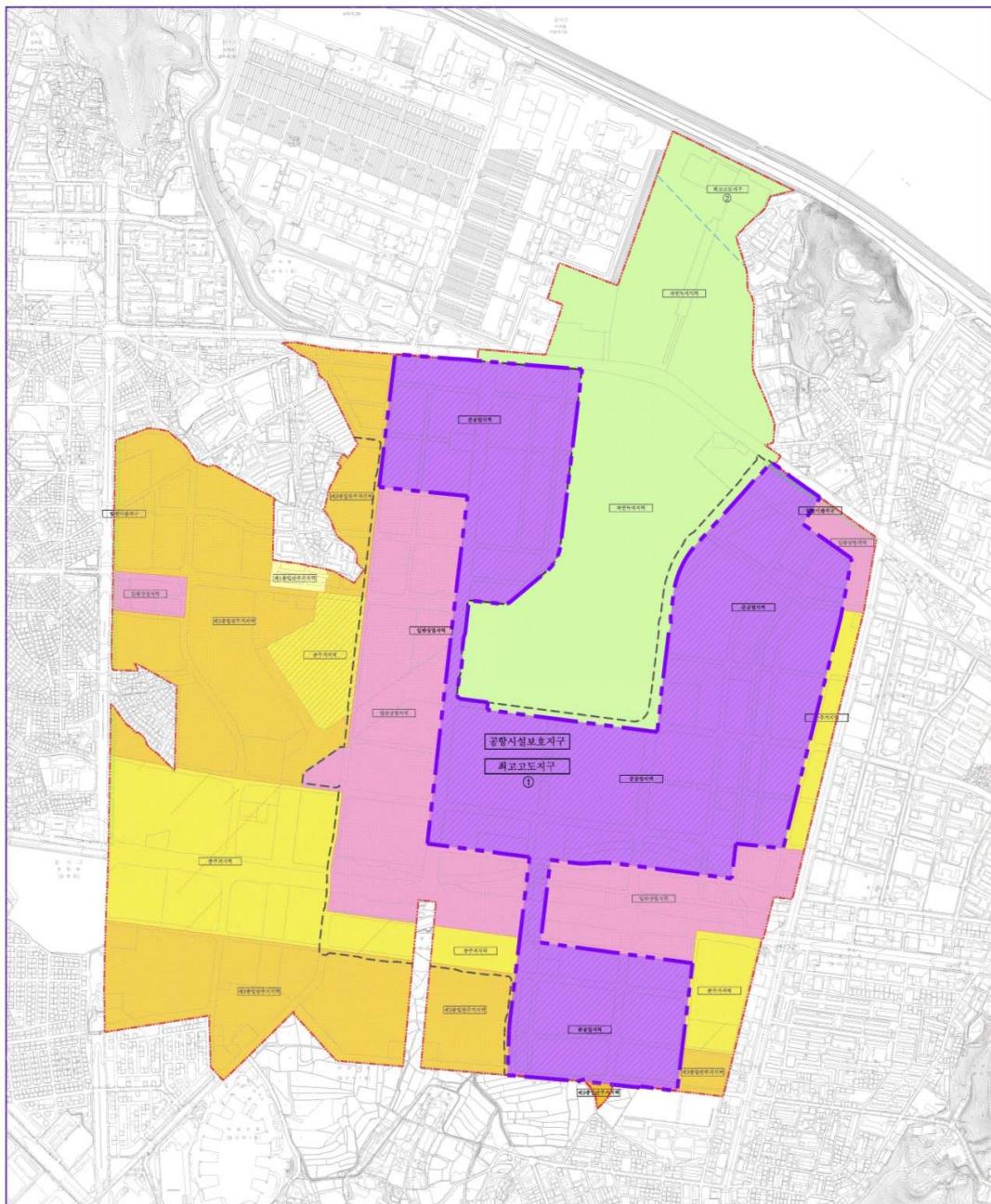
■ 구원 ■ 주차장 ■ 지역시설 ■ 연구복합용지 ■ 녹지

----- 지구분할선 ■■■■■ 양장

S = 1 : 5,000



산업단지용도지역·지구결정도(기정)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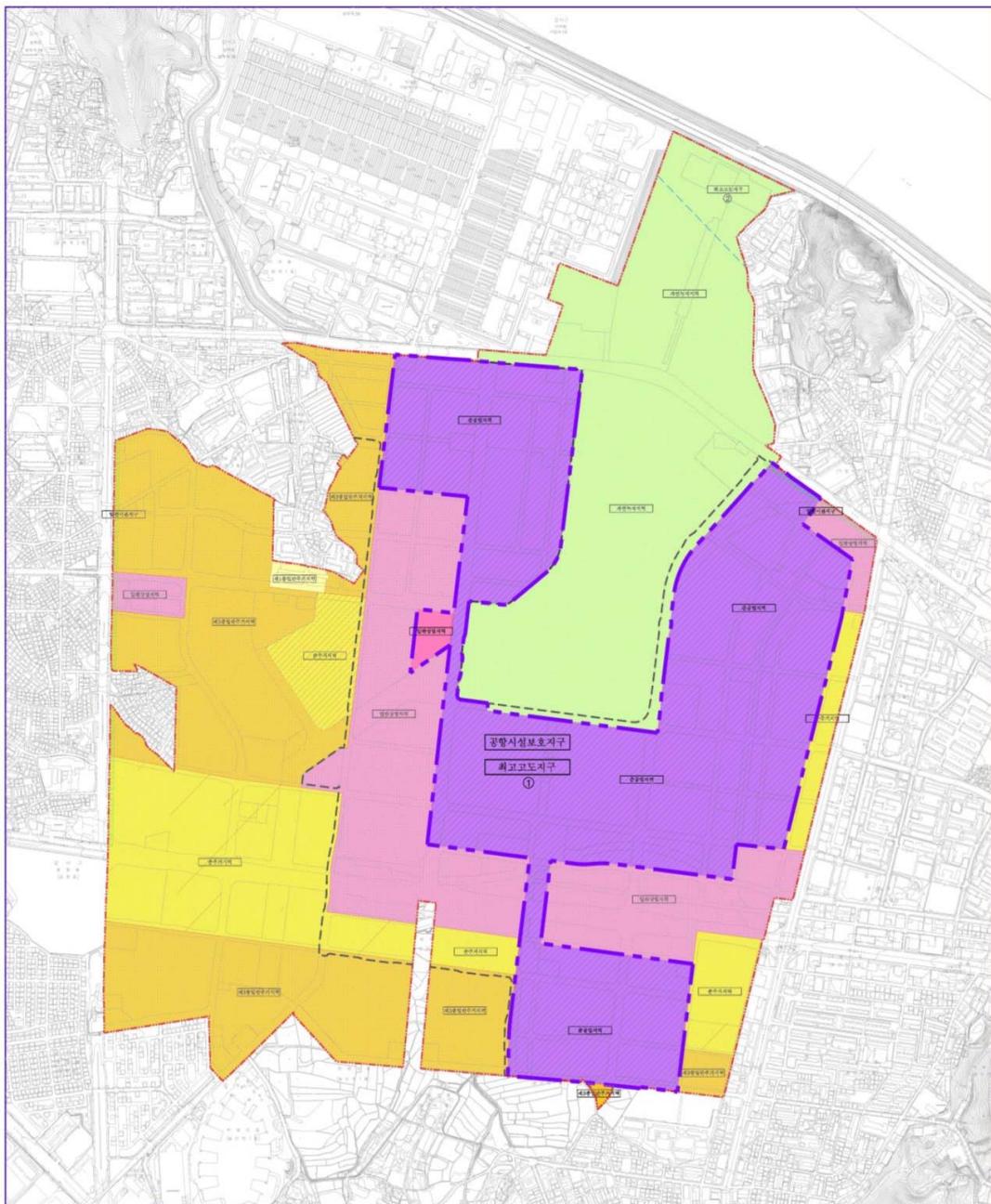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S = 1 : 5,000



산업단지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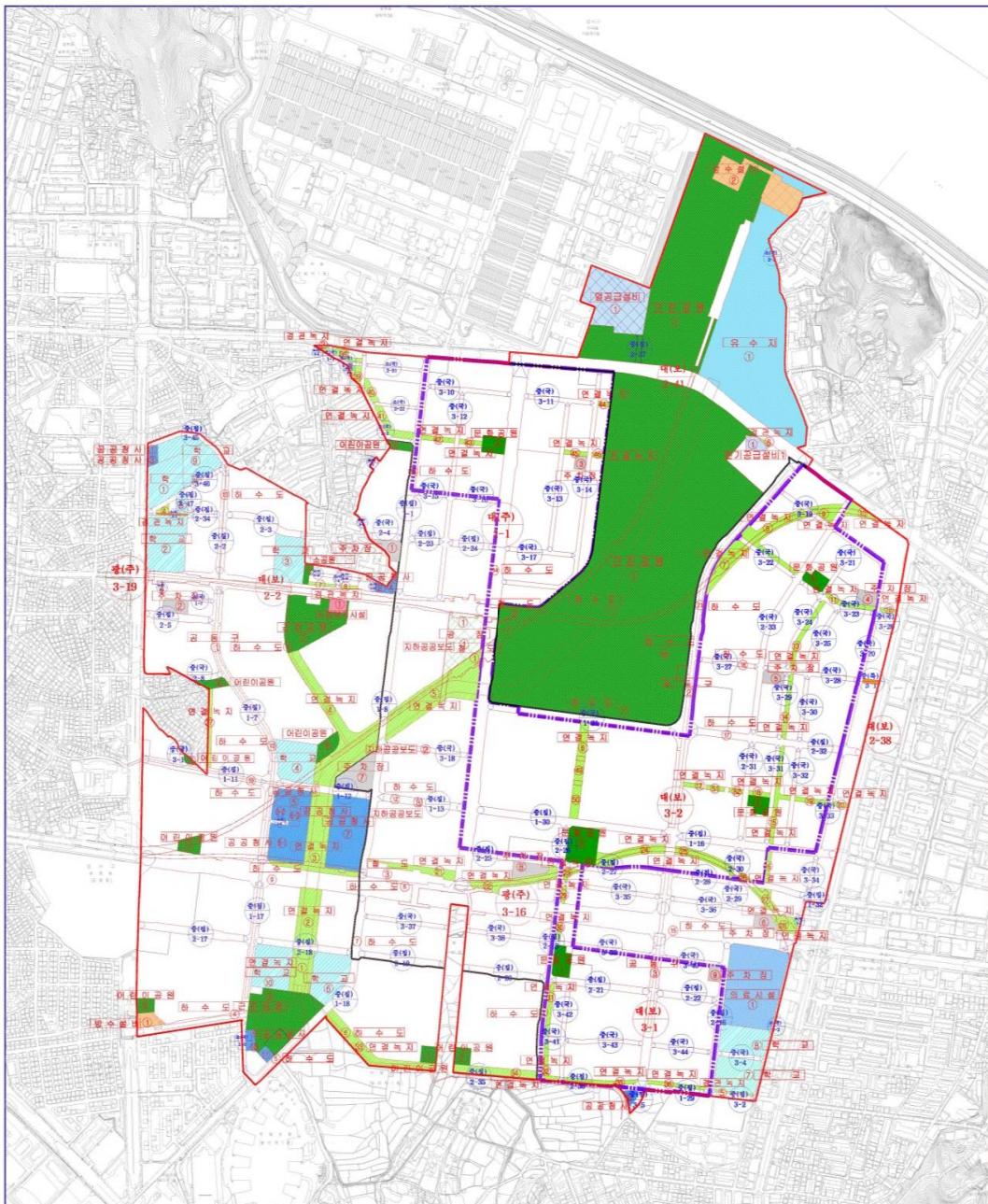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일반상업지역

S = 1 : 5,000



산업 단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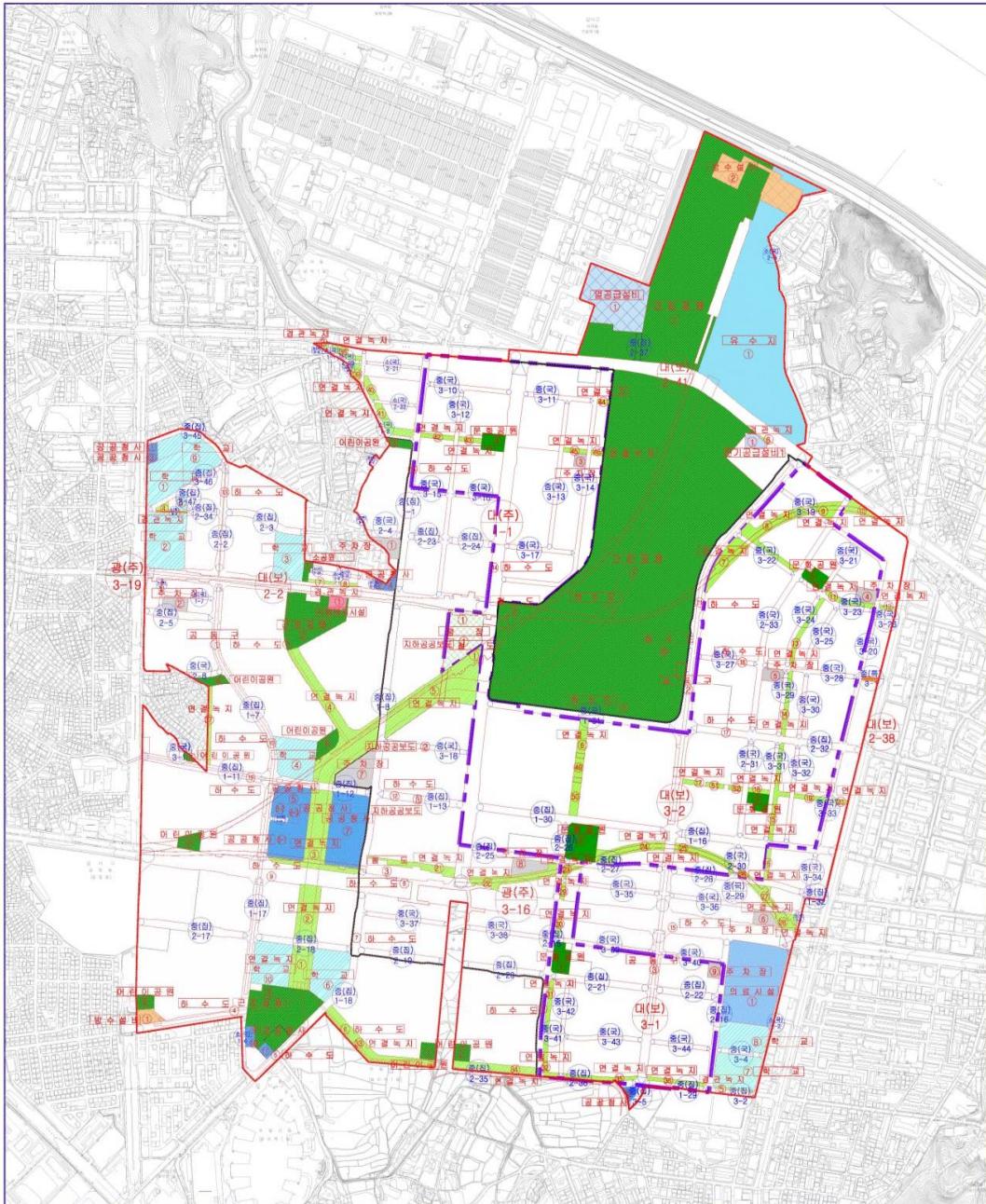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산업 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군 원	녹 지	광 장	학 교	경찰서	유 수 지
의료시설	주 차장	복지시설	방수설비	경공공지	얼공설비
전기급설비	철 도	아수도	강동구	광로	대로
통로	소로	보행자도로	지구분할선		

S = 1 : 5,000



산업 단지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도 (변경)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산업 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강원 ■ 녹지 ■ 광장 ■ 주차장

■ 도로 ■ 철도 ■ 하수도 ■ 관공도 ■ 경동구 ■ 광로 ■ 대로

■ 중로 ■ 터널 ■ 소로 ■ 보행자도로 ■ 지구분할선

S = 1 : 5,000

N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6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2.25)로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5호(2010.8.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명칭 변경>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건립 → 돈화문민요박물관 건립

나. 사업시행 위치 <합지로 인한 필지 변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9외 2필지 → 종로구 와룡동 5-9외 1필지

다. 사업의 규모 <연면적변경>

- 부지 면적 : 908.2m²(건축면적:240m²) → 854.13m²(건축면적:231.63m²)
- 건축 규모 : 지상 1층, 지하 2층(총면적 : 1,487.17m²) → (총면적 : 1,384.82m²)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일로부터 2019년 7월까지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지번변경>(와룡동 5-10번지 와룡동 5-9로 합지(편입)),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변동 없음

사. 변경사유 : 사업의 명칭 변경(건립계획의 변경), 필지 변경(부지 합지에 따른 변경), 부지 면적 변경(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따른 면적 감소), 연면적변경(실시설계 변경), 사업기간연장(공사계약 계획 반영)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박물관과(☎2133-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7호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8호(2001.4.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3호(2015.9.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선유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물놀이터, 환경체험마당의 시설종류 변경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일대

3. 면적 : 110,407m²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300-5535)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유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계	110,407.0	42,397.95	16동	4,016.32	7,259.27	222	110,407.0	42,397.95	16동	4,016.32	7,259.27	222
기 반 도 시 설	소 계	27,647.5	27,647.5				27,647.5	27,647.5				
	도 로	12,324.7	12,324.7				12,324.7	12,324.7				
	광 장	15,322.8	15,322.8				15,322.8	15,322.8				
조 경 시 설	4,784.4	4,784.4				1	6,202.6	6,202.6				
휴 양 시 설	23.4	23.4	1동	20.79	20.79	110	23.4	23.4	1동	20.79	110	$\frac{2}{10}$
유 화 시 설	1,904.5	1,904.5				2	—	—				식재
교 양 시 설	4,422.1	4,422.1	4동	2,089.46	2,760.61	1	4908.4	4,908.4	4동	2,089.46	2,760.61	2
편 의 시 설	443.28	443.28	2동	352.94	684.58	12	443.28	443.28	2동	352.94	684.58	12
관 리 시 설	3,172.77	3,172.77	9동	1,553.13	3,793.29	96	3,172.77	3,172.77	9동	1,553.13	3,793.29	96
녹 지 . 기타	68,009.05					68,009.05						
공원시설을 (법정40%)							(42,397.95m ² / 110,407.0m ²) × 100% = 38.40%					변동없음
공원간폐율 (법정10%)							(4,016.32m ² / 110,407.0m ²) × 100% = 3.63%					변동없음

2. 시설조사

기 번 시 설	구 분	경 전 변				경 변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²)	사설면적 (m ²)	구조	규모	건축물 (m ²)	부지면적 (m ²)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²)	구조	규모	건축물 (m ²)	부지면적 (m ²)	공작물 (m ²)	비고		
	합계			110,407.0	42,397.9			16동 4,016.32	7,239.2	7	222				110,407.0	42,397.9	16동 4,016.32	7,259.27	222	
	소계			27,647.5	27,647.5										27,647.5	27,647.5				
	도로	가		12,324.7	12,324.7					가					12,324.7	12,324.7				
	나	12개소		15,322.8	15,322.8					나					15,322.8	15,322.8				
	나-1	양화동 95번지	(2,030.5)	(2,030.5)						나-1	양화동 95번지	(2,030.5)	(2,030.5)							
	나-2	양화동 95번지	(655.8)	(655.8)						나-2	양화동 95번지	(655.8)	(655.8)							
	나-3	양화동 95번지	(657.7)	(657.7)						나-3	양화동 95번지	(657.7)	(657.7)							
	나-4	양화동 95번지	(180.6)	(180.6)						나-4	양화동 95번지	(180.6)	(180.6)							
	나-5	당산동 1번지	(831.6)	(831.6)						나-5	당산동 1번지	(831.6)	(831.6)							
	나-6	당산동 1번지	(639.8)	(639.8)						나-6	당산동 1번지	(639.8)	(639.8)							
	나-7	당산동 1번지	(1,271.2)	(1,271.2)						나-7	당산동 1번지	(1,271.2)	(1,271.2)							
	나-8	당산동 1번지	(1,255.2)	(1,255.2)						나-8	당산동 1번지	(1,255.2)	(1,255.2)							
	나-9	당산동 1번지	(2,140.2)	(2,140.2)						나-9	당산동 1번지	(2,140.2)	(2,140.2)							
	나-10	양화동 52-1번지	(2,201.4)	(2,201.4)						나-10	양화동 52-1번지	(2,201.4)	(2,201.4)							
	나-11	양화동 95번지	(966.4)	(966.4)						나-11	양화동 95번지	(966.4)	(966.4)							
	나-12	양화동 95번지	(2,492.4)	(2,492.4)						나-12	양화동 95번지	(2,492.4)	(2,492.4)							
	소계			4,784.4	4,784.4					1					6,202.6	6,202.6				
경 시 시 설	금마당	다	양화동 95번지	1,061.7	1,061.7					다	양화동 95번지	1,061.7	1,061.7				2	1,418.2		
	시간의 정원	라	양화동 95번지	2,084.9	2,084.9					라	양화동 95번지	2,084.9	2,084.9							
	녹색기술 정원	마	양화동 95번지	1,246.3	1,246.3					마	양화동 95번지	1,246.3	1,246.3							
	자갈간천과 수로	바	양화동 95번지	391.5	391.5					바	양화동 95번지	391.5	391.5							

구 分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경		변		경		변		경		비 고
				구조	건축물 면적 (㎡)	구조	건축물 면적 (㎡)	부지면적 (㎡)	위 치	구조	건축물 면적 (㎡)	구조	건축물 면적 (㎡)	
조경 시설	환경계류													
목교	①	환경물놀이터내												
소 계			23.4	23.4	1동	23.4	110	(1)	환경계류 내					(1)
휴양 시설	선유정	②	양화동 95번지	23.4	23.4	목구조	23.4	(1)	양화동 95번지	23.4	1동	23.4	23.4	110
장의자	③	시설지내						(108)	③ 시설지내			23.4	23.4	(1)
목재평상	④	환경물놀이터							(4) 환경계류 내					(108)
소 계			1,904.5	1,904.5										
유학 시설	환경체험마당	사	양화동 95번지	486.3	486.3			(1)						
환경물놀이터	아	당산동 1번지 1,418.2	1,418.2					(1)						
소 계			4,422.1	4,422.1	4동	2,089.46	2,760.61	1		4,908.4	4,908.4	4동	2,089.46	2,760.61
원형극장	자	양화동 95번지	467.3	467.3	1동	467.36			양화동 95번지	467.3	467.3	1동	467.3	467.3
환경교실	차	양화동 95번지	197.1	197.1	철골철근콘크리트	1동	148.0	148.0	차	양화동 95번지	197.1	197.1	1동	148.0
수질정화원	카	당산동 1번지	1,449.1	1,449.1					카	당산동 1번지	1,449.1			
교양 시설	선유도 이어기관	타	양화동 95번지	968.3	968.3	철골철근콘크리트	1동	1,576.06	1,794.65	타	양화동 95번지	968.3	968.3	1동 1,576.06
수생식물원	파	양화동 95번지	974.9	974.9						파	양화동 95번지	974.9	974.9	1,794.65
온실	하	당산동 1번지	365.4	365.4	경량철골구조	1동	365.4	350.6	하	당산동 1번지	365.4	365.4	1동	365.4
환경체험 마당										사	양화동 95번지	486.3	486.3	(1) 신규
전동벨브 조령물	⑤	양화동 95번지						(1)	(5) 양화동 95번지					(1)

구 분	전				경				변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	비 고			
소 계		443.3	443.3	2동	352.94	684.58	12			443.3	443.3	2동	352.94	684.58	12					
회장실	가	양화동 95번지	197.1	197.1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106.76	106.76		가	양화동 95번지	197.1	197.1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106.76	106.76					
카페테리아	나	양화동 52-1번지	246.2	246.2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246.18	577.82		나	양화동 52-1번지	246.2	246.2	철골철근 콘크리트 1동	246.18	577.82					
자연거 보관대	⑥	시설지내							(10)	⑥	시설지내							(10)		
음수대	⑦	시설지내							(2)	⑦	시설지내							(2)		
소 계		3,172.77	3,172.77	9동	1,563.13	3,793.29	96			3,172.77	3,172.77	9동	1,563.13	3,793.29	96					
관리사무소	다	당산동 1번지	1,589.4	1,589.4	철근콘크 리트조적 조	1동	483.8	2,564.91	다	당 산동 1번지	1,589.4	1,589.4	철근콘크 리트조적 조	1동	483.8	2,564.91				
회수조 (발전기설 정프실)	마	양화동 95번지	115.6	115.6	철근콘크 리트	1동	115.65	115.65	마	양화동 95번지	115.6	115.6	철근콘크 리트	1동	115.6	115.6				
우수 접수정	바	양화동 95번지	275.0	275.0					바	양화동 95번지	275.0	275.0								
변전실	사	양화동 95번지	288.0	288.0	철근콘크 리트	1동	288.0	288.0	사	양화동 95번지	288.0	288.0	철근콘크 리트	1동	288.0	288.0				
정회조실	아	양화동 95번지/ 당산동 1번지	(427.6)	(427.6)	철골철근 콘크리트 리트	1동	13.64	427.68	아	양화동 95번지/ 당산동 1번지	(427.6)	(427.6)	철골철근 콘크리트 리트	1동	13.64	427.68				
급수탱크	자	당산동 1번지	405.4	405.4	철골철근 콘크리트 리트	2동	405.42	102.44	자	당산동 1번지	405.4	405.4	철골철근 콘크리트 리트	2동	405.42	102.44				
사무실	차	당산동 1번지	209.5	209.5	철근콘크 리트	1동	56.34	100.01	차	당산동 1번지	209.5	209.5	철근콘크 리트	1동	56.34	100.01				
검문소	카	당산동 1번지	265.8	265.8	철근콘크 리트	1동	166.28	166.28	카	당산동 1번지	265.8	265.8	철근콘크 리트	1동	166.28	166.28				
월드컵분수대 감시실	타	양화동 95번지	24	24	철재콘테 이너박스+ 반원목외 장	1동	24.0	24.0	타	양화동 95번지	24	24	철재콘테 이너박스+ 반원목외 장	1동	24.0	24.0				

구 分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²)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조	규모	건축물 (m ²)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구조	규모		
분리수거함	⑧	시설지내						(2)	⑧	시설지내				(2)	
휴지통	⑨	시설지내						(12)	⑨	시설지내				(12)	
시 공원등	⑩	시설지내						(77)	⑩	시설지내				(77)	
CCTV	⑪	시설지내						(5)	⑪	시설지내				(5)	
녹지 및 기타			68,009.05								68,009.05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738.2	12,324.7				변경없음
소 로					772.9	6,603.0				
소 로	3	1	7.5	445.4	3,340.5	진입로	산책로26 (종점)	양화대교	"	
	2	1	9.5	201.5	1,914.3	진입로	광장 나-12	양화대교	"	
산 책 로	2	2	10.7	126.0	1,348.2	우회로	양화대교	양화대교	"	
	소 계				1,965.3	5,721.8				
	3	1	4.0	34.3	137.2	산책로	숲마당	광장 나-1	"	
	3	2	2.7	184.2	497.3	산책로	광장 나-1	산책로 22	"	
	3	3	3.0	264.8	794.4	산책로	광장 나-11	광장 나-6	"	
	3	4	4.0	105.7	422.8	산책로	광장 나-1	광장 나-7	"	
	3	5	3.0	326.7	980.1	산책로	숲마당	광장 나-7	"	
	3	6	1.8	148.8	267.8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나-6	"	
	3	7	1.8	81.3	146.3	산책로	광장 나-6	광장 나-8	"	
	3	8	6.0	14.5	87.0	산책로	산책로 7	장애인주차장	"	
	3	9	3.0	138.7	416.1	산책로	환경물놀이터	온실	"	
	3	10	1.8	35.7	64.3	산책로	숲마당	광장 나-2	"	
	3	11	1.8	33.9	61.0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나-2	"	
	3	12	1.8	10.9	19.6	산책로	산책로 5	환경놀이마당	"	
	3	13	1.8	23.1	41.6	산책로	산책로 5	광장 나-1	"	
	3	14	1.8	51.6	92.9	산책로	광장 나-1	산책로 2	"	
	3	15	1.8	10.9	19.6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5	"	
	3	16	1.8	14.8	26.6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4	"	
	3	17	1.8	27.8	50.0	산책로	산책로 4	광장 나-3	"	
	3	18	1.8	8.1	14.6	산책로	산책로 2	광장 나-11	"	
	3	19	1.8	8.7	15.7	산책로	산책로 2	광장 나-11	"	
	3	20	1.8	8.9	16.0	산책로	산책로 3	광장 나-11	"	
	3	21	1.8	8.4	15.1	산책로	산책로 2	광장 나-11	"	
	3	22	1.8	17.3	31.1	산책로	광장 나-3	산책로 3	"	
	3	23	1.6	77.2	123.5	산책로	산책로 22	녹지	"	
	3	24	1.8	17.3	31.1	산책로	광장 나-8	환경물놀이터	"	
	3	25	3.9	18.4	71.8	산책로	광장 나-8	환경물놀이터	"	
	3	26	5.4	74.9	404.5	산책로	양화대교	양화대교	"	
	3	27	4.0	218.4	873.6	산책로	녹지	소로3-1 (시점)	"	

2017. 12. 14.(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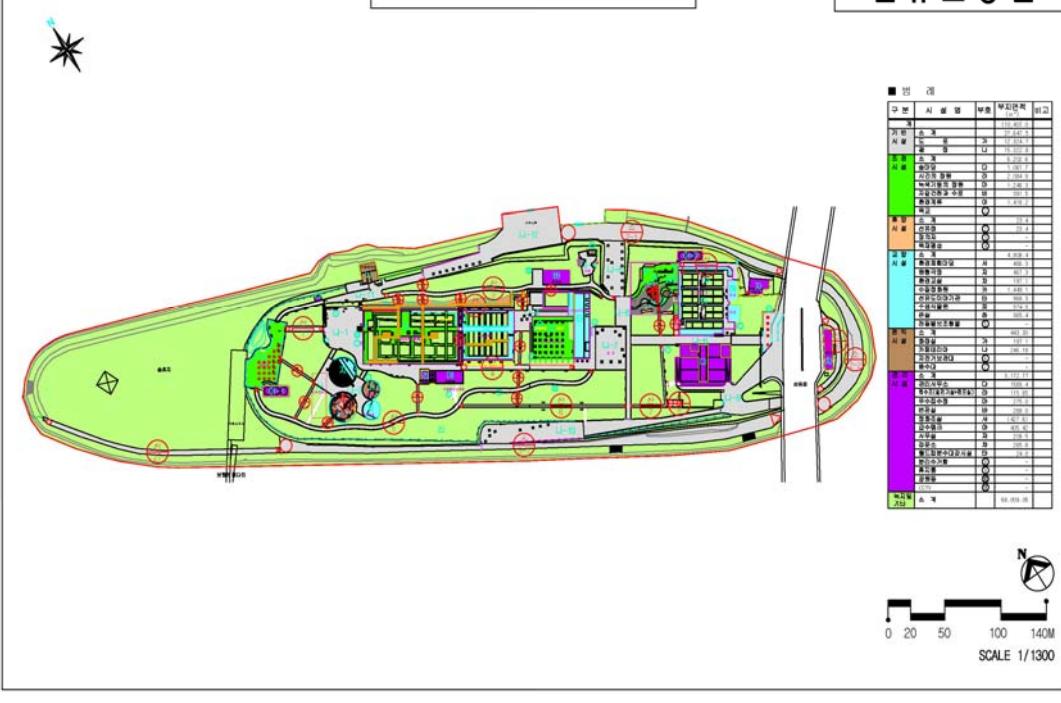
조성계획도(최초)

선유도공원



조성계획도(변경)

선유도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0호**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취지

음주청정 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 예방 및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2. 지 정 일: 2018년 1월 1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서울특별시 직영공원 22개소(전역) - 붙임
4. 계도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3월 31일
5. 단속 개시일: 2018년 4월 1일
6. 과태료 부과액: 10만원 이하
 -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02-2133-7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음주정정지역 지정장소 및 범위

번호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1	도시자연공원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천호대로 1291	전 역 (80,683)
2	근린공원	서울숲	성동구 성수동 685	전 역 (1,156,498)
3	근린공원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전 역 (424,106)
4	근린공원	천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전 역 (26,696)
5	근린공원	시민의 숲	서초구 매현로 99	전 역 (258,991)
6	근린공원	응봉	성동구 뚝섬로 273	전 역 (75,570)
7	근린공원	율현	강남구 율현동 56	전 역 (157,535)
8	도시자연(근린)	남산	중구 회현동1가 산1	전 역 (2,896,887)
9	근린공원	낙산	종로구 낙산길 41	전 역 (198,477)
10	근린공원	중랑캠핑숲	중랑구 망우동 241-20	전 역 (179,666)
11	근린공원	간데메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전 역 (15,179)
12	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월계로 173	전 역 (665,190)
13	생태공원	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	전 역 (51,470)
14	근린공원	월드컵	마포구 상암동 478	전 역 (2,284,085)
15	문화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신월동 산68-3	전 역 (217,946)
16	근린공원	푸른수목원	구로구 연동로 240	전 역 (103,354)
17	근린공원	선유도	영등포구 선유로 343	전 역 (110,407)
18	근린공원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전 역 (229,539)
19	근린공원	경의선숲길	마포구 새창로 37	전 역 (101,668)
20	근린공원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동로 161	전 역 (504,012)
21	문화공원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증산로 87	전 역 (101,510)
22	근린공원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로 216	전 역 (560,552)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3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창인터넷내셔널(주)	나창균	2017.11.07	서울170096	중구 을지로 148, 1101호(을지로3가)	300,000	신규등록
2	(주)매일방송	장대환 장승준	2017.11.07	서울170097	중구 퇴계로 190(필동1가)	279,653,760	신규등록
3	肯달스퀘어 로지스틱스 프로퍼티스(주)	남선우	2017.11.07	서울170098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여의도동)	9,000,000	신규등록
4	(주)아에셋투자개발	김일규	2017.11.13	서울170100	마포구 서강로 77 (창전동, 이랜드사옥)	60,000,000	신규등록
5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현호 조원준	2017.11.13	서울170101	강남구 테헤란로104길 7 (대치동, 디에이그룹빌딩)	1,000,000	신규등록
6	(주)영창개발	김수열 횡승찬	2017.11.14	서울170102	중랑구 봉화산로16길 27-6 (중화동)	410,000	신규등록
7	(주)두언개발엘앤에스	김종훈	2017.11.16	서울170103	서초구 방배로6길 13 (방배동, 파크에비뉴빌딩)	2,120,000	신규등록
8	(주)스페이스다온	조영천	2017.11.20	서울170104	서초구 효령로 425(서초동)	300,000	신규등록
9	새울건설(주)	윤경옥	2017.11.21	서울170105	도봉구 해동로 121, 302호(창동)	500,000	신규등록
10	(주)정경인이앤디	오경진	2017.11.21	서울170106	중구 수표로 45, 715호 (저동2가,비즈센터)	300,000	신규등록
11	에즈원종합건설(주)	권오성 이용찬	2017.11.22	서울170107	강남구 봉은사로 418, 9층 (삼성동)	500,000	신규등록
12	(주)태산디엔씨	안경수 김형래	2017.11.22	서울170108	강남구 테헤란로 327, 1312호 (역삼동, 빅토리아오피스텔)	300,000	신규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3	마스턴제19호 논현피에프브이(주)	마크로버 트마두라 스	2017.11.24	서울170109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 (역삼동, 피씨에스라이프타워)	20,000,000	신규등록
14	(주)피엔케이	박병권	2017.11.24	서울170110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25 (논현동)	300,000	신규등록
15	(주)이랜드건설	김일규	2017.11.06	서울080036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씨동 1802호 (가산동, 비와이씨하이씨티)	300,000	전출
16	건축사사무소이우 (주)	박병길	2017.11.22	서울150007	광진구 자양로11길 4, 301호(자양동)	사업실적 없음	폐업
17	현대비에스엔씨(주)	이휴원	2017.11.10	서울160020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 (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기타	폐업
18	(주)트로스디엔씨	정성엽	2017.11.09	서울130021	중구 퇴계로48길 3, 2층(목정동)	전문인력 부족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5)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44호

2017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2017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2017.9~11)의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이수증 발급 대상자

- 제1호 칠(옻칠) : 2명
 - 김경진, 장용준
- 제17호 은공장 : 1명
 - 이황재
-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 : 2명
 - 양환극(악사), 박순복(무녀)

안내사항

- 이수증은 이수심사 결과 공고 후 15일 이내 이수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보존회 사무실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이수심사 담당(02-2133-2616, 으문선 주무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47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1종 (E-2-525)	㈜삼우설비컨설팅(110111-1512585)	이종형, 김기성, 이민우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5길 52, 503호(삼환디지털벤처타워)	2017.12.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파(☎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52호

**중랑구 북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북동 176-39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I. 열람 기간: 2017. 12. 15. ~ 2017. 12. 28.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 02-2133-4932)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북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랑구 북동 165, 171번지 일대	82,500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96.8.1)	재정비 (서울시고시 제2007-24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입지여건		최대개발규모(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중랑구 북동 176-38, 39	이면부	간선변 (동일로)	1,000	3,000	• 획지 176-23, 1번지, 필지 176-38, 39번지 통 합하여 획지계획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176-38, 39번지 최대개발규모 변경 1,000m ² → 3,000m ²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 176-23, 1번지와 필지 176-38, 39번지를 통합하여 획지를 계획함에 따라 간선변(동일로)의 최대개발규모로 변경

나. 필지별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위치	면적(m ²)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B6	계	1,978.2	감) 4.5	1,973.7	-	-	2개 획지, 2개 필지를 통합하여 1개 획지계획 면적 : 감) 4.5m ² (건축법에 의한 가각전제)
	중랑구 북동 176-23	737.4	-	737.4	획지계획		
	중랑구 북동 176-1	810.4	-	810.4	획지계획		
	중랑구 북동 176-38	215.2	-	215.2	필지계획, 최대개발규모이내 선택적 공동개발		
	중랑구 북동 176-39	215.2	감) 4.5	210.7	필지계획, 최대개발규모이내 선택적 공동개발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 176-23, 1번지와 필지 176-38, 39번지를 통합하여 획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획지계획을 변경 2개 획지(176-23, 1), 2개 필지(176-38, 39) → 1개 획지(176-23, 1, 38, 39) •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지정(가각전제)으로 대지의 일부($4.5m^2$)를 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제적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 (1) 불허용도 : 변경없음
- (2) 권장용도 : 변경없음
- (3) 지정용도 : 신설(가구 B6에 한함)

구분	도면표시	지정용도	비고
지정용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가구 B6'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 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기정				변경		비고	
	접도조건양호 (상업 12m, 준주거 8m 이상 대지)		접도조건불량 (상업 12m, 준주거 8m 미만대지)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가구 B6)	300%	360%	250%	360%	500%	법정용적률 이내	가구 B6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다. 필지별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B6	중랑구 목동 176-23	건폐율	60%이하	변경없음	가구 B6에 한함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250% ^{주1)} 허용용적률 360%	기본용적률 500%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176-1	높 이	최고높이 70m	변경없음	
	176-38 176-39	건축선	건축한계선주2) 1m, 3m	변경없음	

주1) 176-38, 39(이면부)의 기준용적률(기정)은 250% 임

주2) 176-1, 38, 39의 건축한계선은 1m, 176-23의 건축한계선은 1m, 3m 임

(2)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 변경없음

나.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 신설(가구 B6에 한함)

사업조건 항목		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여율 6%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 기준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기본용적률 5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가구 B6에에 한함
	주거 주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 : 민간임대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을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87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미납요금 독촉분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2017.12.10. ~ 2017.12.24.(15일간)
5.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이내에 미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02-3284-54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주경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9길 19. 화원빌 202호 (서신동)	일시: 2017.01.25 장소: 영등포.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3.8 t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573,000원 납기일: .2017.12.31
안평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110동 1406호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일시: 2017.03.03 장소: 영등포.여의도동 올림픽대로 내용: 폭 초과 0.26m 초과	처분일: 2017.11.09 과태료: 336,600원 납기일: .2017.12.08
이병록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55 7동 201호 (용현동, 영동빌라)	일시: 2017.03.03 장소: 서초.반포동 서초소방서앞 내용: 축 하중 1.65 t	처분일: 2017.11.09 과태료: 561,000원 납기일: 2017.12.08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용태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71번길 28 202호 (대야동)	일시: 2017.03.03 장소: 가산동 금천교부근연세외과앞 내용: 높이 0.19m 초과	처분일: 2017.11.09 과태료: 336,600원 납기일: 2017.12.08
조원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5 B동 402호 (월피동)	일시: 2017.03.03 장소: 영등포.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높이 0.19m 초과	처분일: 2017.11.09 과태료: 336,600원 납기일: 2017.12.08 .
이명섭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 (검암동)	일시: 2017.03.03 장소: 영등포.신도림동 신정교 내용: 총 중량 4.85t 초과	처분일: 2017.11.09 과태료: 561,000원 납기일: 2017.12.08: .
김대중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25번길 19 103동 501호 (심곡동, 우림노블레스)	일시: 2017.03.03 장소: 영등포.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 중량 4.85t 초과	처분일: 2017.11.09 과태료: 561,000원 납기일: 2017.12.08: ..
장웅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길 55 102동 502호 (수암동, 엘리지움)	일시: 2017.03.31 장소: 여의도동 올림픽여의하류 내용: 폭 0.18m 초과	처분일: 2017.11.09 과태료: 336,600원 납기일: 2017.12.08.
김기완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79 101동 1502호 (홍도동, 홍도아파트)	일시: 2017.03.31 장소: 금천.가산동 서부간선도로 내용: 폭 0.48m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561,000원 납기일: 2017.12.31.
이세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65 105동 204호 (수색동, 대림한숲타운아파트)	일시: 2017.04.17 장소: 구로.구로동 가마산로 내용: 축 하중 1.9t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561,000원 납기일: 2017.12.31 .
고병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로 152 104호 (내서읍, 너울림빌라2차)	일시: 2017.04.17 장소: 영등포.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 중량 8.1t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897,600원 납기일: 2017.12.31.
전용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암광장로14번길 20 302호 (십정동, 경선오피스텔)	일시: 2017.04.17 장소: 영등포.여의도동 도신로 내용: 축 하중 1.3t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561,000원 납기일: 2017.12.31.
천운복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21-1 204호 (정왕동)	일시: 2017.04.26 장소: 서초.방배동 사방교 내용: 폭 0.17m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336,600원 납기일: .2017.12.31
최병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8다길 11 201호 (독산동)	일시: 2017.04. 장소: 금천.시흥동 금천교 내용: 축하중 1.3 t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7.12.31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성열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15 402호 (검암동, 삼영그랜드파크)	일시: 2017.05.26 장소: 여의도 올림픽여의상류 내용: 축 하중 1.5 t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7.12.31
송성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로366번길 22-6 302호 (행신동)	일시: 2017.05.26 장소: 여의도 올림픽대로 내용: 축 하중 1.9 t 초과	처분일: 2017.12.01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7.12.31.
조윤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1길 17 (본오동)	일시: 2017.06.26 장소: 관악.신림동 호암로 내용: 폭 0.27m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319,800원 납기일: 2017.12.29
심현우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하성로196번길 11	일시: 2017.06.26 장소: 관악.봉천동 관악로 내용: 폭 0.25m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319,800원 납기일: .2017.12.29
곽인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9길 26-7 301호 (성내동)	일시: 2017.06.26 장소: 금천.시흥동 시흥대로 내용: 폭 0.28m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319,800원 납기일: 2017.12.29
박석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53번길 27-2 2동 301호(구월동,문화빌리지)	일시: 2017.06.26 장소: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축 하중 1.2 t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7.12.29
손영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89번길 52 1동 203호 (원종동)	일시: 2017.06.26 장소: 여의도 여의상류 내용: 축 하중 1.35 t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7.12.29
김승수	경기도 광명시 안재로1번안길 31 401호 (하안동)	일시: 2017.05.31 장소: 금천.독산동 금천교입구 내용: 높이 0.25m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319,800원 납기일: 2017.12.29.
이석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독천읍 삼성5길 42 115동 906호부영아파트)	일시: 2017.06.26 장소: 여의도 올림픽대로 내용: 폭 1.28m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319,800원 납기일: .2017.12.29
이봉주	경기도 안성시 태평무길 42 (사곡동, 태평무전수관)	일시: 2017.06.26 장소: 양화동 올림픽로 아리수맞은편 내용: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746,200원 납기일: .2017.12.29
정동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길 15-13 102호 (석관동, 금정빌라)	일시: 2017.06.26 장소: 동작.노량진 노들로 내용: 축 하중 1.45t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7.12.29
김성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6가길 28 (석관동)	일시: 2017.06.26 장소: 동작.노량진 노들길 내용: 축 하중 1.36 t 초과	처분일: 2017.11.30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7.12.2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8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809	2017.11.2.	주식회사 문형이엔씨 안문희 110111-6316081	서울 강서구 화곡로46길 6, 302호 (화곡동)
2	202810	2017.11.3.	주식회사 한국영상솔루션 정돈우 110111-5821.64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1207호 (가산동, 파트너스타워1차)
3	202811	2017.11.3.	길빛시스템 김용록 206-32-1156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702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8)
4	202812	2017.11.8.	주식회사 아이콘정보통신 박종일 110111-6495059	서울 강남구 선릉로89길 7, 403호 (역삼동, 씨알빌딩)
5	202813	2017.11.9.	헥스파워시스템 주식회사 김상성, 김경선 135011-0084992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108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6	202814	2017.11.13.	주식회사 소울시스템즈 김신규 110111-5978006	서울 서초구 동산로6길 16, 601호 (양재동)
7	202815	2017.11.13.	유림테크 주식회사 유희철 110111-1332751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캐슬 1210호)
8	202816	2017.11.15.	주식회사 비에이앤티 임종훈 110111-621119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제412호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9	202817	2017.11.17.	주식회사 티시스 최창성 110111-3300475	서울 중구 동호로 310, 별관 8층(장충동2가)
10	202818	2017.11.20.	주식회사 아이플랜네트웍스 김준환 110111-4524868	서울 마포구 동교로 100, 수영빌딩 402호 (서교동)
11	202819	2017.11.20.	주식회사 애드팍테크놀러지 박수열 110111-1685689	서울 강남구 논현로 338, 2층(역삼동)
12	202820	2017.11.21.	주식회사 비앤아이테크 백승억 110111-6333225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3길 37, 2층(잠원동)
13	202821	2017.11.21.	주식회사 넥서스티앤씨 박용남 110111-6416477	서울 강동구 성내로 89, 201호(성내동)
14	202822	2017.11.24.	주식회사 씨유앰엔아이 김정순 110111-3772327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 189, 6호(세종로)
15	202823	2017.11.28.	원디버시파이드코리아 유한회사 알프레드 디알레산드로 110114-01943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5층 (서초동, 엔데버빌딩)
16	202824	2017.11.27.	주식회사 그린주의 김현미, 이명식 110111-3299.058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23, 703호 (상봉동, 신내테크노타운)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91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내역

등록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변경)	목표액 (백만원)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
2017-114	(사)원진청소년사랑나눔 (대표 : 유봉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51길 23	- 저소득 청소년 장학 금 및 청소년보호시 설 방문 지원	40 (현금및물품)	서울	'18.1.1 ~ '18.12.31
						'18.1.1 ~ '19.12.31
2014-64 -2	손잡고 (대표 : 배춘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 노동법알리기 및 토 론회 등 시민대상 캠페인 사업진행	100 (현금)	전국	'14.8.11~ '15.7.31
						'14.8.11 ~ '17.11.30 ('14.8.11 ~'18.1.30)
2015-102 -1	(재)승일희망재단 (대표 : 박승일·로션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310	-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기금 및 루게릭병환 우를 위한 지원기금 마련	1,000 (현금)	전국	'15.10.23 ~ '16.10.22
						'15.10.23~ '17.10.22 ('15.10.23~ '18.12.31)
2017-29 -1	(재)평화재단 (대표 : 최석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 평화실현을 위한 정 책연구와 글로벌 리 더쉽 양성 (평화실현을 위한 정 책연구와 글로벌 리 더쉽양성 및 한반도 평화대회 개최)	150 (현금)	전국	'17.3.6 ~ '17.12.31
						'17.3.6 ~ '17.12.31
2017-40 -1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표 : 이중명)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1길 30	- 소아암 및 희귀난치 성 혈액질환 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사회 복지적 치료비 지원	500 (현금)	전국	'17.3.27 ~ '17.12.31
						'17.3.27~ '17.12.31 ('17.3.27~ '18.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95호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외 1필지(1502-3)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I. 열람 기간 : 2017. 12. 15. ~ 2017. 12. 28.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임대계획팀 (☎02-2133-7053)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결정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초구 서초동 1502-1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서초동 1502-12, 1502-3	-	증) 2,557.9	2,557.9	•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557.9	-	2,557.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57.9	감) 2,557.9	-	-	
준주거지역	-	증) 2,557.9	2,557.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외 1필지(1502-3)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2,557.9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③ 가구 및 희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가구 및 희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m ²)	희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신규	①	2,557.9	서초동 1502-12	2,272.3	공동개발
			서초동 1502-3	285.6	

■ 희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① 공동개발 지정 - 신규 : 서초동 1502-12, 1502-3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④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주거부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1)} (주거비율 : 연면적 ^{주2)} 의 80%초과 ~ 90%이하)	-
불허용도 (비주거 부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체육시설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시설 	-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주2)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

2.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 최고높이 40m이하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사업조건 항목		지침	완화내용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5% 이상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 15% 미만 (가로변 비주거설치 의무)	기본용적률 400% 부여
	공공임대:민간임대	• 15 : 85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 이상 설치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북측(15m)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 동측(8m)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 남측(6m)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차량출입불허구간	• 북측, 동측 도로변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00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2017.11.6.	112107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 김경한 110111-6533601	서울 중구 을지로 100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빌딩 비동)	양도 양수
2	2017.11.29.	200096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마용득 110111-6557114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가산동, 롯데센터)	양도 양수
3	2017.11.29.	311150	에스케이테크엑스 주식회사 김영철 110111-599054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1(삼성동)	법인 합병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0-61호(2010.2.25.)로 결정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광장 ~ 동대문 광장을 잇는 대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종로구청장

1. 결정 취지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구간 보도를 확보하고자 일부부지를 편입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6	27 ~30	보조간 선도로	2,600 (810)	안국동 광장	동대문 광장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2010-61 (10. 2.25.)	
변경	대로	2	6	27 ~30	보조간 선도로	2,600 (810)	안국동 광장	동대문 광장	일반 도로	-	면적 (14.7m ²)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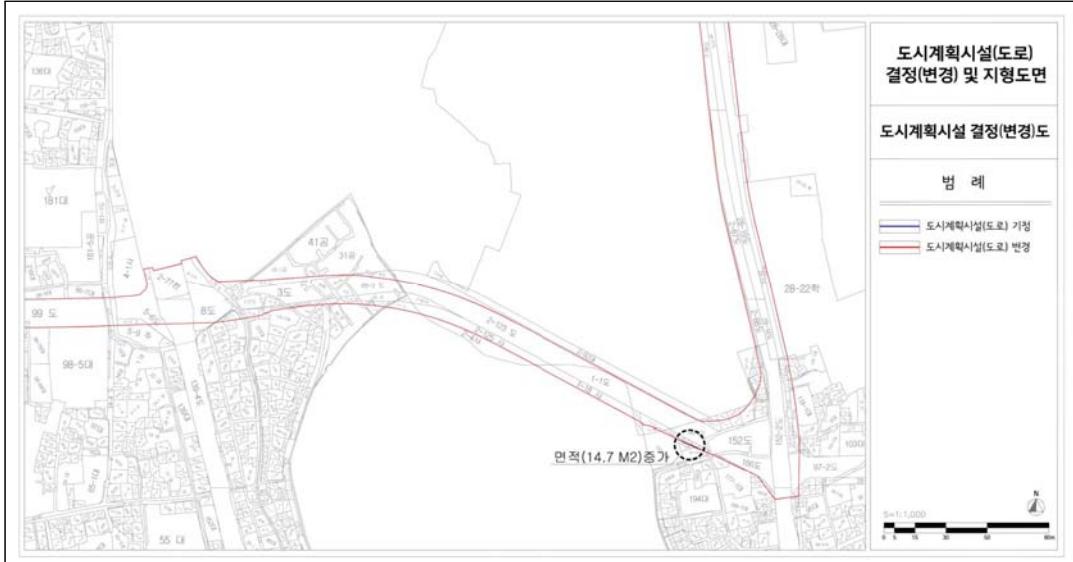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시 도로계획과(☎2133-8077)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종로구고시 제2017-157호

사고지(임목 훼손지) 해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무단 임목훼손에 의해 사고지 지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12-4호(2012.01.26.)로 지형고시된 평창동 523-45번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불법훼손된 임목 등 의 사실 명시 및 해제)에 따라 사고지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 · 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종로구청장

- 해제사유 : 무단 임목훼손되어 사고지 지정된 평창동 523-45번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별표2)에 따라 2014년 제3차 구 도시계획위원회 (2014.04.29.) 자문을 거쳐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 임 목 유지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사고지 해제하도록 결정함.
- 고시내용 : 사고지(임목 훼손지) 해제 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m ²)	비고(기재 내용)
임 목 훼손지	10	평창동	523-45	대	60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고지 내용 삭제 【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임목 훼손-세부사항 공원녹지과 문의)】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2148-266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지(임목 훼손지) 해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scale 1:1,000



◆ 용산구고시 제2017-163호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45호(2007.09.13.), 용산구고시 제2013-2호(2013.01.10.), 용산구고시 제2013-85호(2013.08.22.), 용산구고시 제2014-107호(2014.1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91호(2015.04.02.) 및 용산구고시 제2015-339호(2015.10.29.), 용산구고시 제2017-144호(2017.11.16.)로 변경지정된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용 산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명 :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및 한강로2가 402번지 일대	62,991.37	감)146.60	62,844.77	최초결정일 서고제2006-25호 (2006.01.19.)

※ 변경사유 : 지적획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시행면적 (m ²)			비 고
			계	대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계	-	62,991.37	32,002.40	30,988.97	
변경	계		62,844.77	31,943.90	30,900.87	
기정	1-1구역	한강로3가 40-708일대	4,755.10	2,749.60	2,005.50	
기정	1-2구역	한강로3가 40-712일대	14,577.87	8,527.40	6,050.47	
기정	2구역	한강로2가 391일대	18,870.40	8,705.50	10,164.90	
기정	3구역	한강로2가 342일대	24,788.00	12,019.90	12,768.10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3구역	한강로2가 342일대	24,641.40	11,961.40	12,680.00	

※ 변경사유 : 지적획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라.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2,991.37	감)146.60	62,844.77	100.00	-
대 지	소 계	32,002.40	감)58.50	31,943.90	50.80
	1-1구역	2,749.60	-	2,749.60	4.40
	1-2구역	8,527.40	-	8,527.40	13.50
	2구역	8,705.50	-	8,705.50	13.90
	3구역	12,019.90	감)58.50	11,961.40	19.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30,988.97	감)88.10	30,900.87	49.20
	도로	24,984.67	감)63.50	24,921.17	39.60
	공원	6,004.30	감)24.60	5,979.70	9.60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 ²)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991.37	감)146.60	62,844.77	10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61.90	-	561.90	0.90	-
일반상업지역	62,429.47	감)146.60	62,282.87	99.1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m ²)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일반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62,429.47	62,282.87	• 3구역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원(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2)			최초 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용산역전면 한강로 2가 363-1 일대	6,004.30	감)24.60	5,979.70	서고 제2006-25호 (2006.1.19.)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공원	• 면적변경 - $6,004.30m^2 \rightarrow 5,979.70m^2$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나) 기타시설 : 변경없음

4) 건축물 정비·계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발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m^2)	명 칭	면적 (m^2)					
기정	-	62,991.37	-	32,002.40	-	-	-	-	-
변경		62,844.77	-	31,943.90	-	-	-	-	-
기정	1-1구역	4,755.10	획지	2,749.60	한강로3가 40-708 일대	국방군사 시설	540이하	929.0이하	150이하
기정	1-2구역	14,577.87	획지	8,527.40	한강로3가 40-712 일대	업무, 숙박 판매	50이하	957.0이하	150이하
기정	2구역	18,870.40	획지	8,705.50	한강로2가 391 일대	업무 및 판매시설	50이하	991.4이하	150이하
기정	3구역	24,788.00	획지	12,019.90	한강로2가 342 일대	업무 및 판매시설	50이하	992.0이하	150이하
변경	3구역	24,641.40	획지	11,961.40	한강로2가 342 일대	업무 및 판매시설	50이하	992.0이하	15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input type="radio"/> 해당사항 없음				
심의완화 사항					<input type="radio"/>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input type="radio"/>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10m(1구역 : 5m), 이면도로변 5m <input type="radio"/> 고층부 벽면한계선 : 1구역 간선도로변 10m				

2. 변경사유

- 사업 준공후 이전고시를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초 정비구역 면적보다 146.6 m²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당초 정비구역 면적의 0.23%)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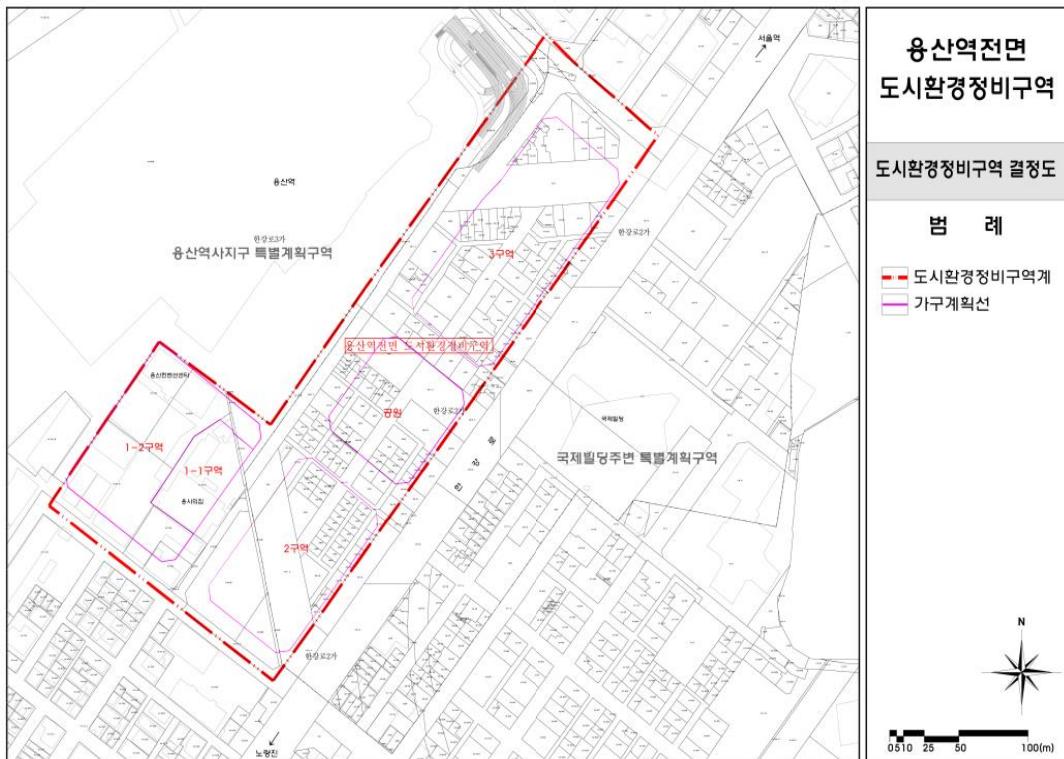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12)에 관련서류 비치 및 열람

【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 】



◆ 광진구고시 제2017-1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3호(2005.5.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광진구공고 제2017-1017호(2017.1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열람공고한 「광장동257-2~281-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로과(☎450-7852)에 비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88-30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광장동 257-2~281-4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폭 12m→15m, 연장 13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사서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사업명 : 광장동257-2~281-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광장동 288-30	대	44	44	1/2	홍재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19동 604호(잠실동, 잠실엘스)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물건조사서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사업명 : 광장동257-2~281-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구격	수량	총별 지분	설계 이용 상황	주 소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1	광장동 288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7m ²	지하1층	점포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권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7m ²	1층	점포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7m ²	2층	사무실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7m ²	3층	주택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m ²	옥탑	주택					
		기단물	판넬	9m ²	옥탑	주택					
		데크	목재	8m ²	데크	승강대					

◆ 성북구고시 제2017-1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67.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2006.7.27)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성북구고시 제2015-69호(2015.4.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성북구 성북동 226-259번지 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사업의 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259번지 일대
- 사업 면적 : 101,059m² 중 68,454m²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15. 4. 30. ~ 2017. 12. 31.
- 변경 : 2015. 4. 30. ~ 2018.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사(변경없음)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사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1	성북	산25-52	임야	23,601	23,601	국(산림청)			
2	성북	산25-1	임야	656,073	12,153	국(산림청)			
3	성북	산25-22	임야	15,168	15,168	국(문화재청)			
4	성북	226-39	대	299	299	서울시			
5	성북	226-40	대	264	264	국(체무부)			
6	성북	226-41	대	489	489	국(체무부)			
7	성북	226-42	대	291	291	국(체무부)			
8	성북	226-43	대	314	314	국(체무부)			
9	성북	226-49	대	1,051	1,051	서울시			
10	성북	226-50	대	783	783	국(체무부)			

토지조사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	성북	226-51	대	635	635	국(재무부)				
12	성북	226-52	대	469	469	국(재무부)				
13	성북	226-53	대	142	142	국(재무부)				
14	성북	226-54	대	83	83	국(재무부)				
15	성북	226-55	대	122	122	국(재무부)				
16	성북	226-56	대	238	238	국(재무부)				
17	성북	226-57	임	2,281	2,28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2-23	원봉로			
18	성북	226-58	대	2,138	2,138	서울시				
19	성북	226-59	대	477	477	국(재무부)				
20	성북	226-60	대	94	94	국(재무부)				

토지조사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공급면적 (㎡)	폐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21	성북	226-61	대	245	245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61	김세환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22	성북	226-64	대	235	235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09, 102-1004호 (역삼2동, 레미안펜타빌)	강선혜			
23	성북	226-66	대	418	4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마두동, 삼성@), 108-301호	강간모			
24	성북	226-67	대	206	2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2(마두동, 벽산@), 606-703호	김인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국(재)무부				

토지조사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폐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25	성북	226-92	대	231	23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92	고연신			
26	성북	226-246	대	20	20		국(재무부)			
27	성북	226-247	도로	296	296		국(건설교통부)			
28	성북	226-250	도로	788	788		성북구			
29	성북	226-253	도로	133	133		국(건설교통부)			
30	성북	226-254	도로	143	143		국(재무부)			
31	성북	226-256	대	2	2		성북구			
32	성북	226-258	도로	533	533		성북구			
33	성북	226-259	임	2,273	2,273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토지조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4	성북	226-261	임	248	248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회인이트빌리지)	박경미			
35	성북	226-264	임	160	160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회인이트빌리지)	박경미			
36	성북	226-270	대	42	42		성북구			
37	성북	226-273	대	10	10		국(재무부)			
38	성북	226-274	대	31	31		국(재무부)			
39	성북	226-275	대	15	15		성북구			
40	성북	226-276	대	26	26		성북구			
41	성북	226-277	도로	2	2		성북구			

토지조사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폐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42	성북	226-278	임	10	10		성북구		
43	성북	226-279	임	6	6		성북구		
44	성북	226-281	대	64	64		서울시		
45	성북	226-282	임	96	96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7ا, 회인아트빌리지)	박경미		
46	성북	226-283	임	45	45		박경미		
47	성북	226-284	임	37	37	“	박경미		
48	성북	226-285	대	346	346		국(재무부)		
49	성북	226-286	임	27	27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7a, 회인아트빌리지)	박경미		

토지조사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0	성북	226-287	임	6	6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밸리지)	박경미			
51	성북	226-288	임	4	4	"	박경미			
52	성북	226-289	대	34	3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3, 301호	김인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53	성북	226-290	대	47	47	국(제무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03, 102-1004호 (역삼2동, 레미안펜타빌)	강선혜			
54	성북	226-291	대	57	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마두동, 삼성④), 108-301호	강건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2(마두동, 벽산④), 606-703호	강상모			

토지조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위치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55	성북	226-292	임	14	14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회인아트빌리지)	박경미		
56	성북	226-293	대	30	30		성북구		
57	성북	226-295	임	482	482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회인아트빌리지)	박경미		

률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지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번 지	물건의 종류 중류	구조 구역	면적(m ²)	면적(m ²) 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명	비고	
						공부상 면적	측 량 면적	주소	성명	
1	성북동 226-64 226-198 226-63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면조	76.0334	208	주거 및 영업	18	천막구조물 (주차장)		
						5	화장실			
						105	천막구조물 (영업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64	한경일 기준무허가 일부신발생	
						8	창고			
						10	창고			
						26	주거			

률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지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설계이용 상 면적		
2	성북동 226-61 226-59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면조	186	주거			신발생
				26	창고			
				9	원두막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61	김세현	
				26	창고			
				18	원두막			
3	성북동 226-67	건물 (주택)	조립식 등	94	주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3,301호	김인자	신발생

◆ 성북구고시 제2017-17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67.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2006.7.27)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성북구고시 제2016-163호(2016.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한 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2차)』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사업의 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2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 사업 면적 : 101,059m² 중 5,772m²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16. 12. 1. ~ 2017. 12. 31.
- 변경 : 2016. 12. 1. ~ 2018.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사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동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소유권이 예 권리증류 및 내용
1	성북	226-33	대	364	364	성북	226-33	대	364	364	국 (재정경제원)	
2	성북	226-36	대	400	400	성북	226-36	대	400	400	국 (재정경제원)	
3	성북	226-65	대	482	482	성북	226-65	대	482	482	성북구 성북로 31길 135(성북동)	유상수
4	성북	226-68	대	353	353	성북	226-68	대	353	353	국(재무부)	
5	성북	226-69	대	1,028	1,028	성북	226-69	대	1,028	1,028	국(재무부)	
6	성북	226-109	임	734	734	성북	226-109	임	734	734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삼선교지점)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근저당권 지상권
7	성북	226-122	임	50	50	성북	226-122	임	50	50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총석탑길 7-1(서동)	제단법인라인 문화재단
8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서울시	

토지조사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위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양 및 내용			
	동명	지번			동명	지번										
9	성북	226-242	대	30	30	성북	226-242	대	30	30	성북구					
10	성북	226-251	대	2	2	성북	226-251	대	2	2	송파구 잠실동 19 아파트 63동 403호	이종원				
11	성북	226-252	도로	18	18	성북	226-252	도로	18	18	관악구 남부순환로248길 29(봉천동)	이복성				
12	성북	226-316	입	183	183	성북	226-319	입	183	183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7, 회인아트빌리지)	박경미				
13	성북	226-300	입	26	26	성북	226-300	입	26	26	송파구 백제고분로23길 26, 503호(삼전동)	김영노				

토지조사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번호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목	위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폐역 면적 (m ²)	주소	성명	
	동명	지번	동명	지번					
14	성북	226-301	대	16	16	성북	226-301	대	16
15	성북	226-302	대	14	14	성북	226-302	대	14
16	성북	226-303	대	1	1	성북	226-303	대	1
17	성북	226-304	대	56	56	성북	226-304	대	56
18	성북	226-305	입	5	5	성북	226-305	입	5
19	성북	226-306	입	10	10	성북	226-306	입	10
									부산 서구 시약로 122, 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률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암산도시지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2차-

연번	소재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실제이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북동 226-65 226-270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서멘조 조립식	59.306052	54	주거	성북구 성북로 31길 135 (성북동)	유상수			기준무허가
				-	1	보일러실					신발생무허가
2	성북동 226-33 226-109	건물 (주택)	서멘조	39.6696	74	주거	성북구 하월곡동 60-160	최태양			기준무허가
3	성북동 226-33 226-122	건물 (주택)	서멘조	49.587	118	주거	성북구 성북동 226-33	백정자			기준무허가
4	성북동 226-36	건물 (주택)	서멘조 조립식 등	-	45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서멘조 조립식 등	-	81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 노원구고시 제2017-1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2014. 01. 23.)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19(2016. 03. 0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아래 지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동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2116-38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노원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2) 사업의 명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503,528.00m²
- 2) 사업규모 : 2개동, 16,483.04m²
 - 수립학사 : 지하1층, 지상 7층, 면적 8,251.93m²
 - 누리학사 : 지하1층, 지상10층, 면적 8,231.11m²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금회 변경)

- 1) 변경전 : 미래드림주식회사(대표:원준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양재동)
- 2) 변경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표:김종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 허가일(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준공예정일 : 2017.12.30.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변경 없음(생략)

아. 고시 방법 : 시보 게재

◆ 강서구고시 제2017-1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1호(2006.12.14.)로 결정된 강서구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획지단위 공동개발(변경)

가구번호	지번	면적(m ²)	내용		비 고
			기정	변경	
C10 (화곡동)	1063-10대	584.5	획지단위 공동개발	획지	획지 일부 해제
	1063-11대	148.1		단독개발	

2. 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7-126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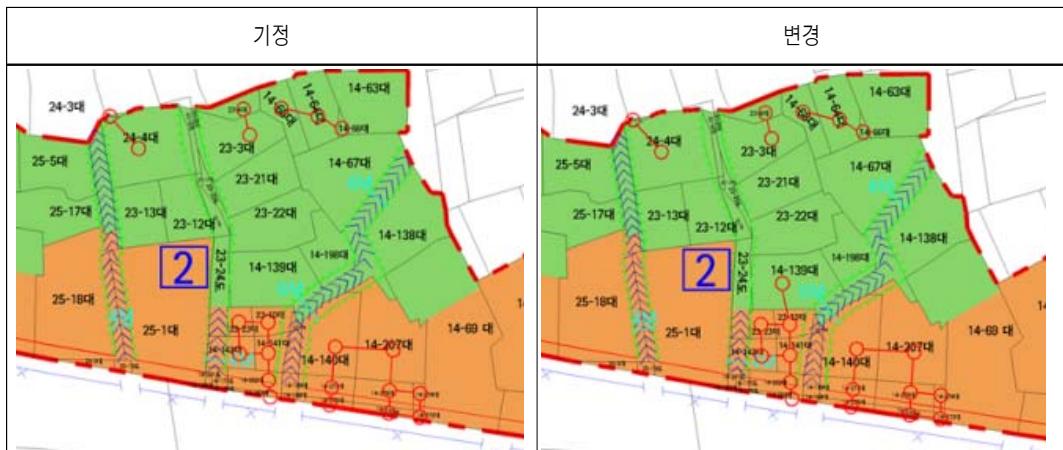
2017년 12월 14일
강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위치	면적(m ²)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공항동	14-139	222	단독개발	공동개발(지정)
	23-10	53		
	23-23	33		
	14-141	53		
	14-142	69		
	14-282	51		
	14-283	9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금천구고시 제2017-113호

가산동 38-1호(신번지 777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우리 구 아래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 적정(조건)함에 따라,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코자 하며,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보와 구보에 각각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가. 대지위치 : 금천구 가산동 38-1호(신지번:777번지)

나. 사업주체 : 국제자산신탁(주)

다.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3,626.12m²

마. 건물용도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바. 건폐율 : 52.38%, 용적률 : 203.14%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 사업계획승인번호

- 2017-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2017.01.25.)

자. 변경승인 내용

- 지적화정측량결과 대지면적 감소($1,298\text{m}^2 \rightarrow 1,275\text{m}^2$)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증가

- 연면적(63.73m^2)증가, 건축면적(11.89m^2) 증가

- 기계실 보일러실 위치변경, 발코니 신설

차. 면허세 : 67,500원

◆ 관악구고시 제2017-96호

도시관리계획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2호(2016. 7. 14.)로 결정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봉천동 858-12호 외 2필지의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

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획지계획	면적(m ²)	획지계획	면적(m ²)
봉천동 858-1	공동개발 (지정)	795.9	단독개발	379.5
봉천동 858-12			공동개발	746.7
봉천동 858-6	단독개발	330.3		

※ 건축물의 건축한계선 변경 : 봉천동 858-6호 건축한계선 1m → 2m 후퇴

3. 지형도면 : 불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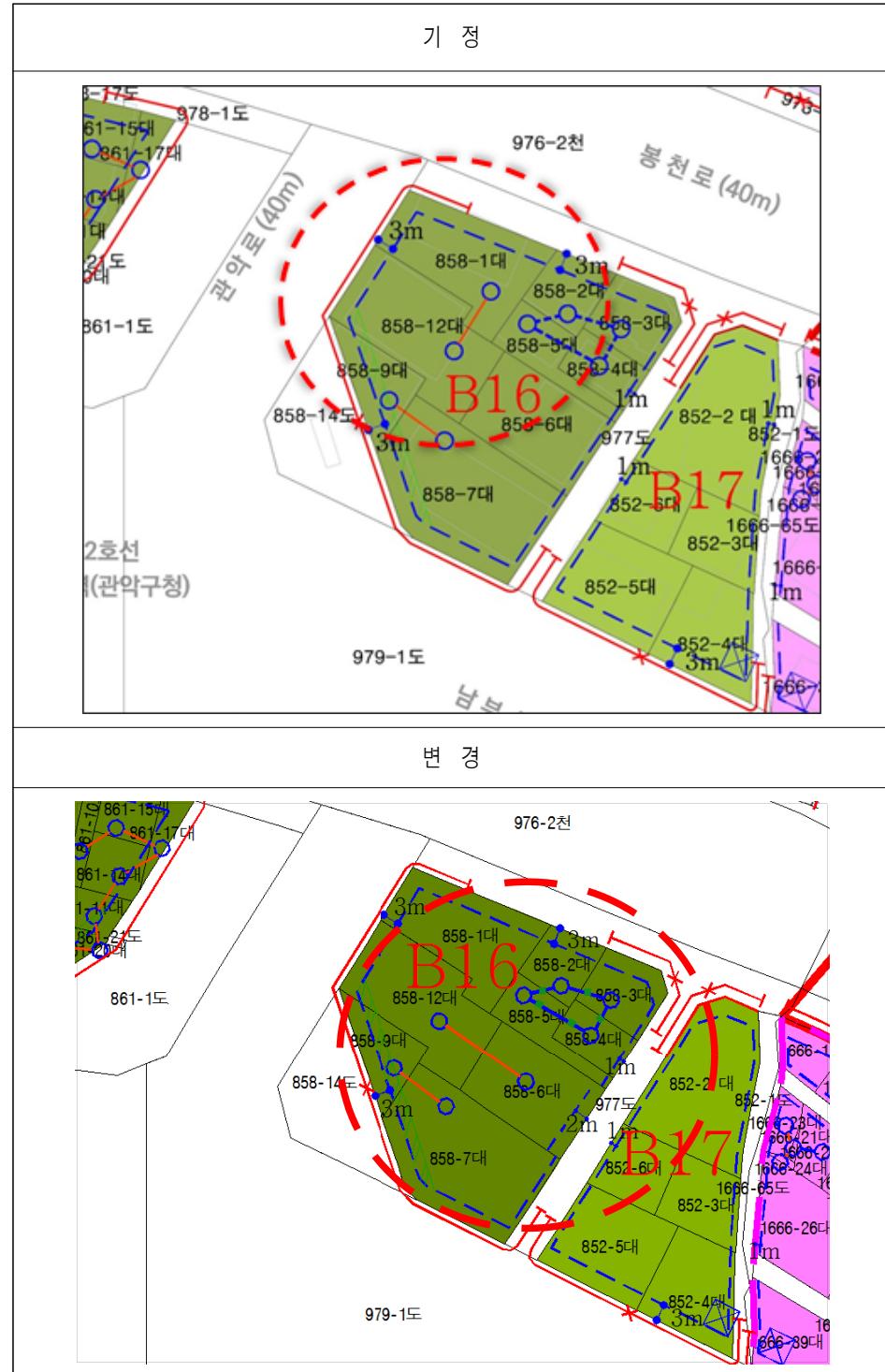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봉천동 858-1,6,12호]



◆ 관악구고시 제2017-97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1호(2015. 4. 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181호(2017.5.25.)로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신림동 1432-45호 외 1필지의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획지계획	면적(m ²)	획지계획	면적(m ²)
신림동 1432-45	공동개발 (지정)	335.5	단독개발	145.1
신림동 1432-44			단독개발	190.4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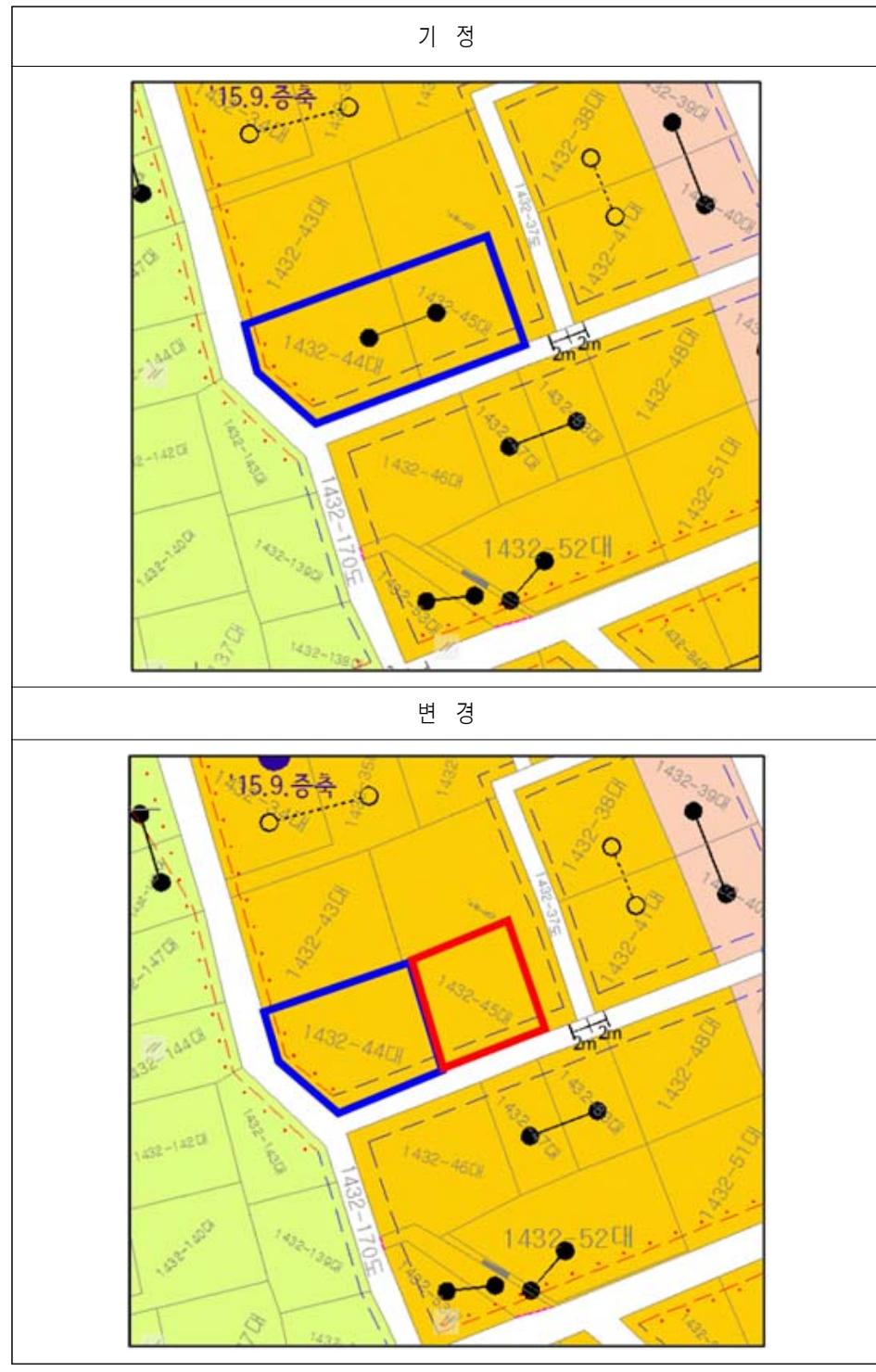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1432-45, 1432-44호]



◆ 관악구고시 제2017-98호

도시관리계획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2014. 7. 24.)로 결정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공동개발) 및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신림동 530-2호 외 1필지의 획지계획(공동개발) 및 공동주차 출입구 위치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지번	획지계획	면적(m ²)	획지계획
신림동 530-2	공동개발 (지정)	684.6	단독개발	321
신림동 530-27			단독개발	363.6

※ 공동주차출입구 위치 변경(2개소)

- 기정 : 1) 신림동 530-2, 530-28 사이 -변경 : 1) 신림동 530-27, 530-1 사이
 2) 신림동 530-29, 530-31 사이 2) 신림동 530-28, 530-29 사이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530-2, 530-27호]



◆ 송파구고시 제2017-16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94호(2003.12.1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제2010-109호(2010.3.25)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송파구고시 제2016-22호(2016.3.17)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송파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명 칭 : 기숙사동 신축 공사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5 외1필지
- 대지면적 : 111,902.3m²
- 규 모 : 지하2층 ~ 지상8층 13개동, 연면적 85,555.89m²
 - 금회변경: 기숙사 연면적 변경 ↳연면적 17,887.70m²,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8,695.84m², 지하1층/지상8층
 -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연면적(m ²)		건물층수(높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신축	기숙사	2,958.80	2,914.31	17,887.70	18,695.84	15,079.19	15,887.33	지상7층 지하1층	지상8층 지하1층
철거	기숙사	2,288.41	0	8,279.44	0	8,102.74	0	지상4층 지하1층	-
일부 철거	학생회관	1,720.03	927.45	5,308.84	4,516.26	4,580.86	3,788.28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 기 건축허가('16.12월)사항 금회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임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15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2016.3.17 ~ 2017.12.31

└ 변경: 2016.3.17 ~ 2018.10.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 계				111,902.3	
1	방이동 88-15	학	107,322.8	107,322.8	한국체육대학교
2	88-19	도	4,579.5	4,579.5	"

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없음

◆ 송파구고시 제2017-1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호(2013.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5-67호(2015.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16-44호(2016.4.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 송파구 마천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06	30	주간선 도로	266	하남시 학암동	송파구 마천동	일반 도로	천마근린 공원	'13.2.21	-총 2,295m중 서울시구간 266m에 한하여 인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17.12.31.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18.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도로)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물 준공 후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

야.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용지조서

일련 번호	지번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증감 내역(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도로구 간	경구부 구분 지성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254-6	254-6	도	99	99	9	10	10	1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2	254-5	254-5	천	276	276	136	134		-2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3	247-1	247-1	전	364	364	181	177	177	-4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4	245-1	245-1	답	1,223	1,223	228	224	224	-4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5	244-11	244-11	도	843	843	289	280	280	-9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6	238-8	238-8	답	1,442	1,442	222	224	224	2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7	238-6	238-6	전	323	323	33	33	33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8	584	584	공	99.5	99.5	40	39.8	39.8	-0.2	공	송파구		
9	238-9	238-9	전	8	8	8	8	8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0	산1-24	산1-24	임	83	83	83	83	83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244-7	244-7	도	50	50	50	50	50		에스에이지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	산1-4	산1-4	임	3,404	3,404	76	116	116	40	강정순 와인	서울 송파구 마천동 237-1	서울시강서구 구양천로 574(하월 곡지점)	지상면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도로 구간	경구부	구분 지상면	터널사이	증감 내역(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	244-5	244-5	도	110	110	110	110	110				공	송파구				
14	237	237	공	129	129	129	129	129				공	서울특별시				
15	244-6	244-6	도	118	118	118	118	118				에스에이치 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6	244-1	244-1	도	28	28	28	28	28				공	송파구				
17	산1-5	산2	공	120,765	170,517	2,565	9,575	2,480	125	4,858	2,112	7,010	공	서울특별시			
	산1-23		임	3,881		126					-126	공	서울특별시				
18	63-6	63-6	대	330	330	145	174	174			29	서현철	서울서초구 방배동 754-1 1번 배롯캐슬헤론 102-803				
19	63-7	63-7	집	451	451	327	353	353			26	서현철	서울서초구 방배동 754-1 1번 배롯캐슬헤론 102-803				
20	63-2	63-2	집	603	603	468	540	540			72	최두일	송파구 마천동 63-1				
21	63-4	63-4	도	14	14	14	14	14				공	서울특별시				
22	63-8	63-8	도	1,083	1,083	18	17	17			-1	공	서울특별시				
23	63-1	63-1	대	174	174	141	171	171			30	최두일	송파구 마천동 63-1				
24	63-5	63-5	대	67	67	67	67	67				서현철	서울서초구 방배동 754-1 1번 배롯캐슬헤론 102-803				
25	63-3	63-3	대	124	124	124	124	124				서현철	서울서초구 방배동 754-1 1번 배롯캐슬헤론 102-803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도로구 간	법정 구역(m ²)	법정 구역(m ²)	구분 지상권 터널사이	증 감 내역(m 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례	비 고
26	산13-4	임			7,943		72	72			72	대한예수교 장로회마천 세계로교회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84-46				신규
27	산12-2	도			15,222		16	16			16	공	서울특별시				신규
28	산1-29	임			1,010		7	7			-648	공	서울특별시				
	산1-25	공			4,331		648				-910	공	서울특별시				
	산1-26	임			2,348		910				-2,144	공	서울특별시				
	산1-28	임			4,700		2,144				-3,288	조길웅 외 2인	서울시동작구 상도동279-412				
	산1-1	임			6,620		3,288										
소 계							12,725	12,893.8	5,791.8	125	4,865	2,112	168.8				

(2) 구분지상권조서

구분	성남방향터널(L=340.5m)			침실방향터널(L=343.8m)			합계면적 (구분지상권) (m ²)
	면적 (m ²)	심도(범위)(m)	지하사용높이(m)	면적 (m ²)	심도(범위)(m)	지하사용높이(m)	
산2	2,767	14.93~64.03	49.18~72.23	2,091	22.01~67.43	48.22~71.94	4,858
산1-29	-	-	-	7	48.08~48.08	49.37~70.92	7
합계(m ²)	2,767	-	-	2,098	-	-	4,865

(3) 지정물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m ³)	성명	소유자	비고
	시	구							
1	서울	송파	마천	주택	철골구조	42.36	서현철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63-3	
				소매점	철골구조	134.71			
2	서울	송파	마천	주택	벽돌구조	48	서현철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63-3	

◆ 강동구고시 제2017-19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강동구 공고 제2017-286호(2017.3.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2번지 외 10필지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강동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2번지 외 10필지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2번지 외 8필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암사역사공원 조성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모

- 당초 : 토지보상 10,938m²
- 변경 : 토지보상 7,061m²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아.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토지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당초	1	192	전	2,061	2,061	이순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0-27, 507동 203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3/7
						이재석	경기도 오산시 월리사로 71, 301호(월동, 명석빌딩)				1/7
						이하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1, 102동 504호(동천동, 행림마을진로아파트)				1/7
						이순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27, 507동 1003호(수내동, 푸른마을)				2/7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변경	1	192	전	2,061	2,061	이순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0-27, 507동 203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3/7
						이재석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70, 504동 1704호(원동, 주공아파트)				1/7
						이하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가로 11, 102동 504호(동천동, 행림마을진로아파트)				1/7
						이순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27, 507동 1003호(수내동, 푸른마을)				2/7
당초	2	137-2	전	1,432	1,432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20(암사동)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2	137-2	전	1,432	1,432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20(암사동)	서울경기 양돈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당초	3	197-3	전	1,000	1,000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변경	3	197-3	전	1,000	1,000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당초	4	135-2	대	329	329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흰영철강공 업주식회사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5	근저당권	
변경	4	135-2	대	329	329			와이케이 스틸(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근저당	
당초	5	135-3	전	988	988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흰영철강공 업주식회사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5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5	135-3	전	988	988			와이케이 스틸(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근저당	
당초	5	135-3	전	988	988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암사동)	흰영철강공 업주식회사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5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5	135-3	전	988	988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길 10(암사동)	와이케이 스틸(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근저당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당초	6	139-4	임	242	24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강동구 세무관리과		압류	
변경	6	139-4	임	242	24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강동구 세무관리과		압류	
당초	7	188	대	865	865	심인숙	1030 N. Broadway Everett WA 18201	송파구 세무2과 강동구 세무1과 잠실세무서		압류 3	
변경	7	188	대	865	865	심인숙	1030 N. Broadway Everett WA 18201	송파구 세무2과 강동구 세무1과 잠실세무서		압류 3	
당초	8	135	전	2,885	2,885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이지움아파트)				761.17 /2885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이지움아파트)				799.83 /2885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숀)				662/28 85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강동농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 (암사동)	근저당권	662/28 85
변경 (제외)	8	135	전	2,885	0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이지움아파트)				761.17 /2885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이지움아파트)				799.83 /2885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662/28 85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강동농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 (암사동)	근저당권	662/28 85
당초	9	137-9	전	992	992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59(지양동)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뚝섬로 639 (지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5/9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소양로2가)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뚝섬로 639 (지양동)	지상권	2/9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59(지양동)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뚝섬로 639 (지양동)	지상권	2/9
변경 (제외)	9	137-9	전	992	0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59(지양동)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뚝섬로 639 (지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5/9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소양로2가)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뚝섬로 639 (지양동)	지상권	2/9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59(지양동)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뚝섬로 639 (지양동)	지상권	2/9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당초	10	138-4	전	72	72	신성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52, 111동 301호(도화동, 현대아파트)				
변경	10	138-4	전	72	72	신성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52, 111동 301호(도화동, 현대아파트)				
당초	11	139-7	임	72	7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변경	11	139-7	임	72	7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구 공 고

◆ 서초구공고 제2017-16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학교)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초구 방배동 593-40번지 위치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학교)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사유

- 대상지는 1971.12.3.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설로서 방배국군통합 적환장으로 결정되었으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 가능성이 없어 폐지하고 학교 및 공공공지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학교)을 변경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학교) 변경 결정 조서(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적환장	방배동 593-40	165	감)165	0	1971.12.3	서울시고시 제74호
폐지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적환장	방배동 593-40	165	감)165	0	1971.12.3	
신설	①	학교	중·고등학교	방배동 593-40	0	증)31	31		
신설	②	공공공지			0	증)134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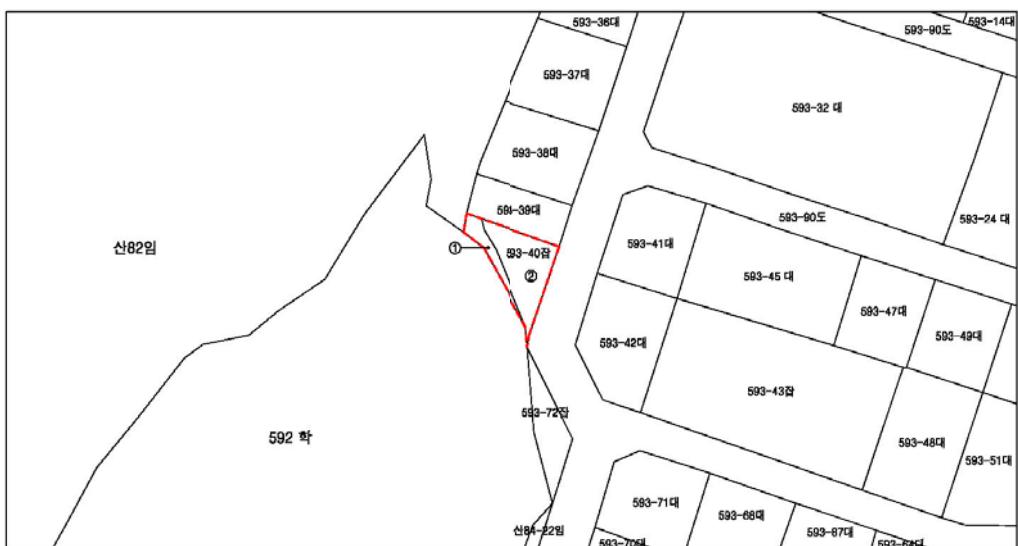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7)

5.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6.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학교)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안)



N

SCALE = 1/1,000

A horizontal bar divided into four equal-width rectangular segments. The segments are colored white, black, white, and black from left to right.

100M

四四

- ## 도시계획시설(쓰레기 적환장) 해제 지적선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적환장	방배동 593-40	165	0	165	1971. 12. 3	서울시고시 제74호
폐지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적환장	방배동 593-40	165	감) 165	0	1971. 12. 3	서울시고시 제74호
신설	①	학 교	중·고등학교	방배동 593-40	0	증) 31	31		
신설	②	공공공지			0	증) 134	134		

◆ 서초구공고 제2017-16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75호(1984.02.1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1984.05.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되어, 서초구고시 제2001-5호(2001.01.05), 서초구고시 제2003-100호(2003.09.01), 서초구고시 제2008-12호(2008.03.21), 서초구고시 제2008-31호(2008.06.16), 서초구고시 제2008-88호(2008.09.29), 서초구고시 제2009-74호(2009.12.17), 서초구고시 제2010-56호(2010.12.30), 서초구고시 제2013-53호(2013.05.16), 서초구고시 제2014-120호(2014.10.02), 서초구고시 제2015-94호(2015.08.06), 서초구고시 제2016-109(2016.11.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45호(2017.09.2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서초구 서초동 산130-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초구청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산130-6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사업
- 3) 시행지 면적 : 166,789m²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시행면적	166,478m ²	166,789m ²	311m ² 증가
건축면적	32,359.95m ²	32,359.95m ²	-
연면적	128,577.54m ²	128,577.54m ²	-
용적율산정용면적	80,465.09m ²	80,465.09m ²	
건폐율	19.44%	19.40%	0.04% 감소
용적률	48.33%	48.24%	0.09% 감소
건물동수	9동	9동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예술의 전당 사장(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 5) 시행기간 : 1984.5.28. ~ 2019.12.31.

-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17-159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54호(1995.5.3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10-82호(2010.12.2.)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1-26호(2011. 4.28.)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5-83호(2015. 7.1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천호동 449번지 앞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천호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출입구 이설 공사』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4일
강 동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2)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 강동구 천호동 447-8번지 일대 - 강동구 천호동 455 일대	51,461.3	감) 6.3	51,455.0	서고시 154호(1995. 5.31.).	

2) 주차장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주차장	주차장 출입구 이설 설치 후 면적 변경 ($167m^2 \rightarrow 160.7m^2$)	· 시공 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정정을 위한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대한 사항

- 1) 위 치: 강동구 성내동 160-52도(강동역 환승 지하주차장 출입구 - 천호동 449대 앞)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천호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출입구 이설 공사
-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 없음)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 성 명: (주)생보부동산신탁 대표 김상진

4) 사업시행기간 및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규모	167.0㎡	160.7㎡	감) 6.3㎡
기 간	인가일로부터 ~ 2017. 7.30.	인가일로부터 ~ 2017.12.2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체면적	사용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기정	성내동 160-52	도	51,461.3	167.0	서울특별시				
변경			51,455.0	160.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구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7)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8) 열람장소: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32)

9) 관계도서: 계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교통공사사장 (토목1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46 (용답동)	서울시계내 한강 (잠실철교)	선박 3척	잠실철교 성능개선을 위한 내진보강공사	2017.12.11.~ 2018.03.21	2017. 12.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2척 (기선1, 부선1)	정박대기	2017.12.11. ~ 2017.12.31.	2017. 12.11.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98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68-2번지 일원
 - 면 적 : 340,00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 내 역 :
 - 데크시설 12개소 등 340,000m²
5. 점용기간 : <당초> 2001.05.02.~2006.05.01.
<변경> 2006.05.02.~2021.05.0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99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중동 93-1번지 일원, 토정동 136번지 일원, 신정동 80-1번지 일원

- 면적 : 9,879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강변테마공원 조성
 - 내역 :
 - 밤섬지구 : 사고석 포장 L=210m², 녹지경계석 127m, 아스콘포장 1.4m²
 - 마포권역 : 사고석 포장 L=12,430m², 녹지경계석 62m, 아스콘포장 9.6m², 소이콘 포장 120m², 포장구분경계석 320m
- 5. 점용기간 : <당초> 2006.12.13.~2011.12.12.
 <변경> 2011.12.13.~2021.12.1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0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1-8번지 일원
 - 면적 : 9,185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자연학습장 리모델링
 - 내역 :
 - 리모델링 1식
- 5. 점용기간 : <당초> 2008.8.22.~2013.8.21.
 <변경> 2013.8.21.~2018.8.2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0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한강공원(이촌공원 4.07km, 잠원공원 2.7km)
 - 면 적 : 96,731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자연형 저수호안 조성
 - 내 역 :
 - 자연형 저수호안 조성
 - 호안사면 : 은제화 후 식생매트 설치 등, 호안기술 : 사석부설
 - 관목(갈대, 억새 등) 식재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1.04.06.~2016.04.05.
 <변경> 2016.04.06.~2021.04.0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0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12-3번지(망원 수영장 내)
 - 면 적 : 26m²(일시 20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벗물펌프장 토출관로 맨홀 설치
 - 내 역 :
 - 유지관리 맨홀 신설
5. 점용기간 : <당초> 2011.12.06.~2016.12.05.
 <변경> 2016.12.06.~2021.12.0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0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8 순창빌딩 5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95-1번지 및 93-3번지
 - 면적 : <당초> 37.09m², 일시 49.61m²
 <변경> 35.70m², 일시 47.2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 내역 :

당초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1개소, 전기·광관로 20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1개소, 전기·광관로 195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9.21. ~ 2022.09.20.(변경 허가일로부터 30일, 2018.1.6.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0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8-1번지 등 10필지

- 면적 : 45.96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관부식 방지시설 설치
 - 내역 :
 - 정류기 1개소, 전기방식용 양극 20개소, 케이블포설 22개소
- 5. 점용기간 : <당초> 2011.11.03.~2016.11.02.
 <변경> 2016.11.03.~2021.11.0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1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장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용산구 및 마포구 일원
 - 면적 : <당초> 68.56m²
 <변경> 77.59m², 일시 124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광역상수관로의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방식 보강공사
 - 내역 :

당초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6개소 * 용산구 이촌동 전기방식 시설물 보강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 ~ 2022.12.6.(변경 허가일로부터 30일, 2018.1.6.까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